2026-5 세무회계경영저널

2026
5
Monthly Magazine
통 권 270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2025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국세청)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하게) (국세청)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세청)
- 중동 전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 및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2025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안안세건회조계세법정인보

안세 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5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이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대손금 중 손금산입 계상 가능 조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2
✓용역해외수입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국외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3
✓법인의 주임종 가지급금 · 대여금의 정상화 방법들 …… 4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Checkpoint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5

이달의 특집

✓2025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국세청) …… 13

세무정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세청) …… 110

경영정보

✓중동 전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 및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132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136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4월) …… 144

5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대손금 중 손금산입 계상 가능 조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안세재경저널 2026/4/1일자 통권 1773호

① 상법 소멸시효 완성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5년
② 어음법, 수표법상 대여금 및 선급금의 민법 단기소멸시효 완성 : 단기시효 3년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⑤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물품 수출이나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⑦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⑧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자와 거래 제외)
⑩ 화해·화해권고결정, 결정·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⑪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⑫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용역해외수입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국외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 안세재경저널 2026/4/15일자 통권 1775호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지급 하면서 대가를 받은 해당 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

2. 대리납부의 성립요건
① 용역의 성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세관에서 부가세 10%를 징수함에 상응하는 개념)
② 공급자(용역 등 제공자)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해외 S/W회사, 현지 인플루언서)
③ 공급받는 자(대가지급자) : 면세사업자(병원・학원), 비사업자(국가기관 비영리단체), 과세사업자 중 매입세액 불공제인 경우(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

3.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방법 : 대리납부세액 = 지급대가 보수・수수료 등×10%(총대가는 용역보수×110%임) (비용은 100이고 10은 선납매입세액으로 공제 차감됨)

4. 징수・신고・납부
• 징수시점 : 국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임
• 납부기한 : 대가지급일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임(과세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3개월마다임)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5. 불이행시 가산세 : 미납가산세(과소납부액×3% + 미납일수별 0.022% 가산)

6. 용역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56조 적용 : 소득세율 22%(지방소득세 2%) 또는 내국인은 3.3%(과학기술, 경영관리전문 기술자의 지식・기능활용용역)

7. 실무 적용
① 총지급액의 10%는 부가세 대리납부액으로 추가하며, 지급소득용역 총대가의 22%는 원천징수납부함
② 국내 성형병원에 해외 환자를 모집알선해주는 해외인플루언서(유튜버 등)에게 대가 지급시 적용됨

⊙ 법인의 주임종 가지급금 · 대여금의 정상화 방법들

- 안세재경저널 2026/4/22일자 통권 1776호

개념, 구분		정의, 범위, 회계처리, 세무대응
가지급금 정의		법인 돈이 밖으로 지출된 경우, 지출증빙이 없거나 대표 등이 개인적 용도로 빌려간 돈
발생원인		① 대표 · 임원 · 직원 등의 개인적 용도 사용 ② 영업상의 업무추진비 · 접대비 ③ 현장급여 등 증빙없는 경우 ④ 과거의 결산과정상 미결사항이나 적격증빙불비
회계계정		가지급금은 임시 · 연중 경과 계정, 최종재무제표에는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대여금, 재무제표의 대외신뢰성 하락요인
세무상 불이익		•인정이자가산 익금산입(정기예금이율 4.6%를 가산해 수입이자 계상) : 법인세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이익에 대해 대표이사 · 임직원 등 실익자 상여처분 : 소득세 •대응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지급이자 중 안분비용부인 : 법인세 추가됨
해결 방법	반환	주 · 임 · 종업원이 빌린 돈을 본인 개인 현금 등 자산으로 회사에 상환함
	급여 등	가지급금자의 급여와 상여금 처리 · 반영 → 원천소득세와 4대보험 증가
	퇴직금	대표이사 등을 실제 퇴직처리하고 가지급금과 퇴직금 상계(퇴직소득세가 낮음)
	배당	회사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금으로 대체상환함 : 종소세 등 증가
	자기주	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을 취득한 대금으로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양도소득세(25%) 발생
횡령 · 배임 등		적법 아닌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회사공금유용으로 민 · 형사처벌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Checkpoint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국세청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6.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였다.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

○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부터 6.1.까지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 6. 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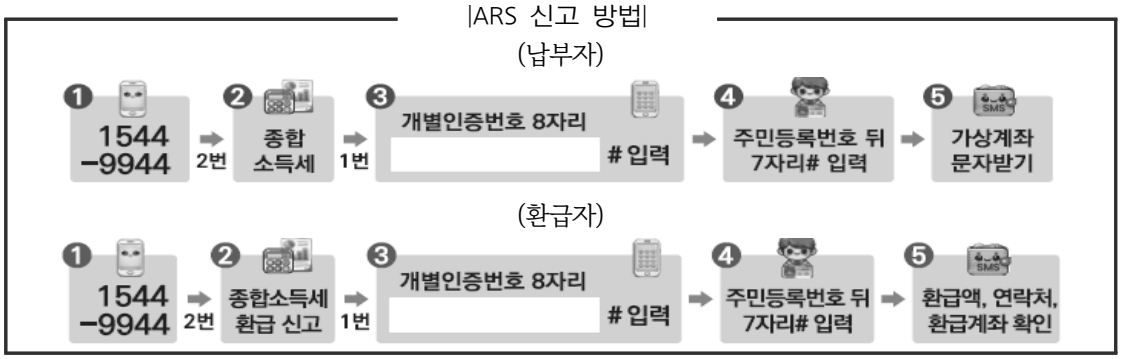
2 2026년 소득세 신고, 납세자 친화형 신고환경으로 개선

□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

|ARS 신고 방법|



□ 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세를 조기에 환급

□ 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안내 완료

□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4 납세자별 개별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하였다.

○ 아울러「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진시정 기간인 20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영세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 실시

□ 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2년 이후 최다인원(26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는 제외하여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

○ 이번 세정지원에는 ❶유가 민감업종, ❷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하여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 또한 '24.7.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절세혜택

□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6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환경 제공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 1.~5.31.은 06시 ~ 익일 01시, ②6. 1.은 06시 ~ 24시)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 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고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 1.(월)까지!

□ (신고기간)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 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 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업종별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주요 신고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4. 24.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 28. ~ 4. 29.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 24.	• 단순경비율 대상자	: 4. 30.
• 자기조정 대상자	: 4. 27.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 1. ~ 5. 2.
•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 4. 30.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 3. ~ 5. 5.

□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6.1.(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는 납세자가 부담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참고2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홈택스·손택스 신고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종료된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3 모두채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소득세 조기 환급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17만 명의 납세자에게 5. 1.(금)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 직전 과세기간(2024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완료)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참고4 영세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지원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3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연장 대상|

①'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②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③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꼭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

□ 티몬 회생,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절세혜택」란을 통해 필요경비 조기인식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 더불어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어업인들을 위해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만, 위 결정은 어업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니 신고·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해양수산부를 통해 어업인분들께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5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맞춤형 안내 지원(국민비서)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 제공하는 정보는 대상자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납부 기간·방법 등이다.

○ 일반 신고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두채움 대상자, 기한 중 미납부자, 기한 연장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차수	대상	내용	시기
1차	모두채움 + 일반유형 대상자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5월 4주
2차	모두채움 대상자 중 미납부자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5월 5주
	일반유형 대상자 ※ 국세 신고자 중 지방세 미신고자 포함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3차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8월 5주 (예정)

□ 또한 금융결제원과 연계를 통해, 모두채움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신고 안내





2025년분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표

Ⅰ.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론 총괄 / 30

Ⅱ. 2025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점검사항 / 38

Ⅲ.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표 적용방법 / 41

Ⅳ. 2025년 귀속 소득의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 45

Ⅴ. 2025년 귀속 소득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표 / 53





Ⅰ.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론 총괄

(기업경영조세전략(안건조세정보 발간) 발췌·참조)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정흐름 및 연말정산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인 1년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 등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이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성 공제항목과 연금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의 인적사항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계산상 소득발생의 계속성이 있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소득금액계산방법은 법인의 경우의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각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소득별로 10년간의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이밖에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과 일용근로자 급여 및 비과세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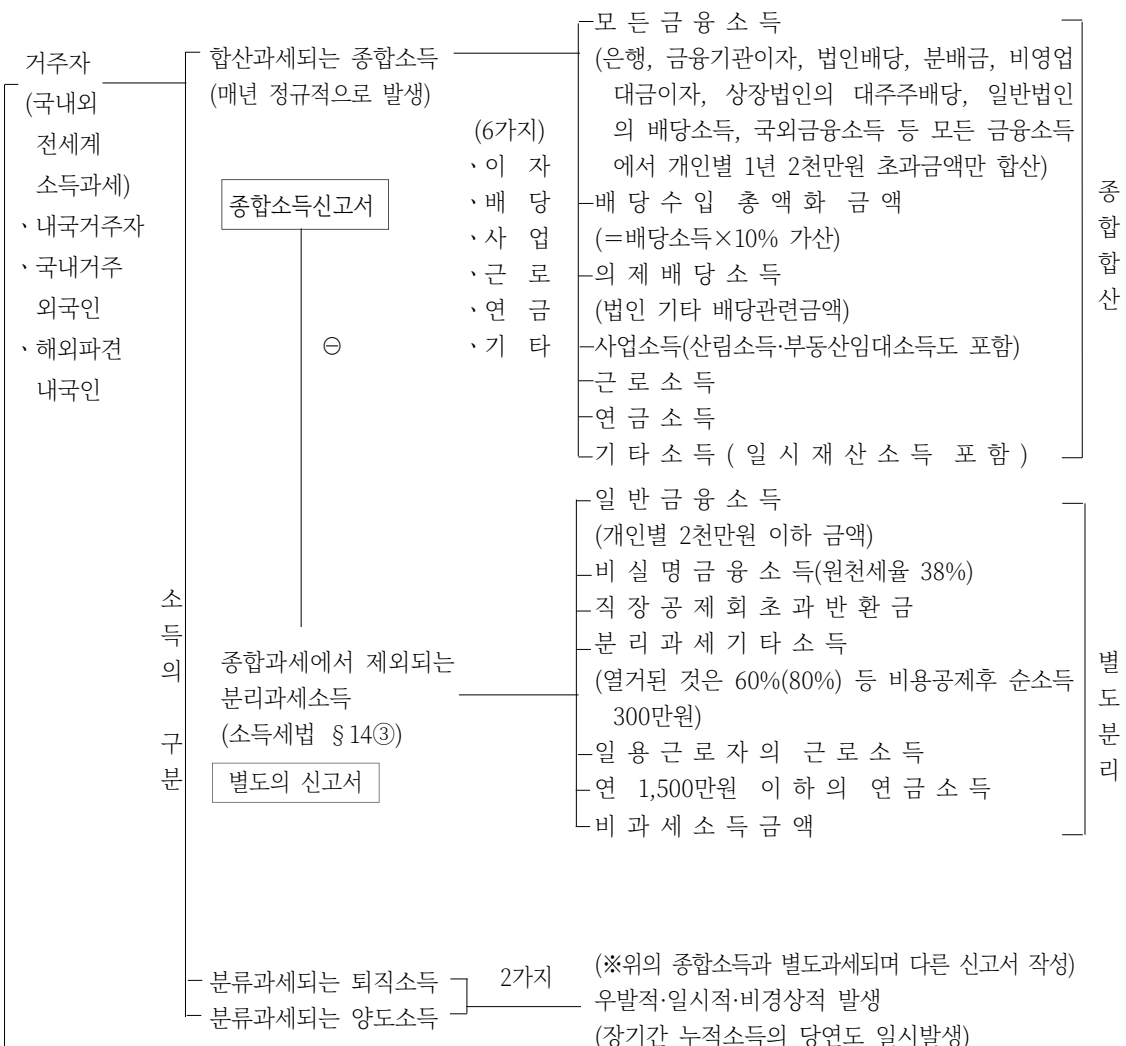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종류로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70세 이상 경노우대공제·여성세대주공제·한부모공제·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있다.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소속회사에서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판매수당이나 모집수당만 있는 경우로서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및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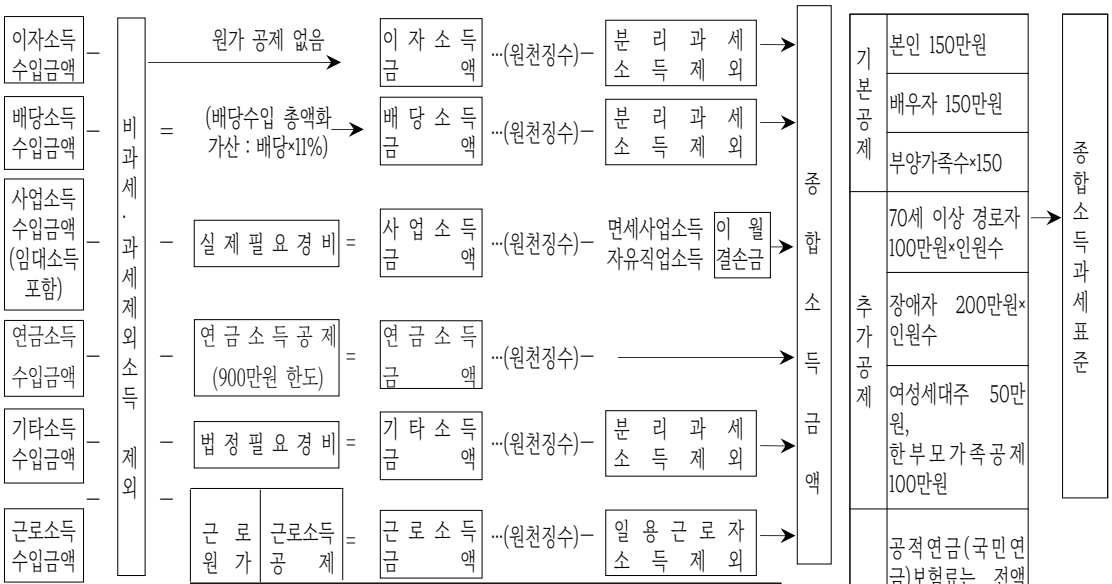
5월말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소득공제 및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미신고 및 부당초과환급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0.022%×경과일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세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의 종합 도해 설명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헌재의 위헌판결(2001헌바82, 2002. 8. 29)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 명의와 실질소득원천대로 각각 합계하여 따로 계산함(부부별산제).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흐름도



기타공제		
	법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주택마련, 취득, 임차관련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600~2,000만원 한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지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25% 초과사용액의×15%(직불카드 등 : 30%, 전통시장사용분 : 40%) ≦연 300만원~250만원 한도(전통시장사용분 추가 300만원)

구 분(공제순)	공 제 범 위
배당세액공제(법 §56)	◦법 §17①1.~4. 배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공제)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상당액만 공제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기장세액공제(법 §56의2)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시 20% 공제(100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법 §56의3)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법 §118의6)⇨양도소득산출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법 §58)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때 ◦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산세액 포함)×상실비율(재해손실가액을 한도로 함)
근로소득세액공제(법 §59) (납세조합가입자 포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71만5천원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만원 한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시는 일률적으로 55%씩 세액공제(한도 : 연 500,000원)
자녀세액공제(법 §59의2)		◦ 출산·입양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자녀 1~2명은 25·30만원/명, 3명 이상은 40만원/명
연금저축·퇴직연금(법 §59의3)		◦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법 §59의4)	의료비,교육비 기부금,보장성 보험료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사용액 15% 세액공제 ◦ 기부금 사용액 15%(30%) 세액공제◦보험료 1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6%~45% 8단계 초과소득 누진세율)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1,400만원까지	◦6%(= 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45%

*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 : 세액×30% 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 : [산출세액－130만원]×30%＋130만원×55%), 세액공제 계산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74만원~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 하루 일당 15만원씩 공제후 일괄 6%를 곱하여 55% 세액공제함. 세액=(일당－15만원)×6%×45%(세액공제 적용비율 55% 차감 후인 45%)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양도비)}(양도차익이라 함)－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400만원까지	◦6%(= 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45%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 미등기 양도자산(입주권 포함) : 70% · 1년 미만 보유자산 : 50%(주택·입주권·분양권은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 40%(주택·입주권·분양권은 60%) ·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도 일반세율(6~45%) 적용 · 비사업용토지 : 16%~55% · 조정지역내 주택입주권 : 60%~70% · 조정지역내 1세대2주택 : 일반세율 + 20% ·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 : 일반세율 + 30%	· 주권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 －소액주주 양도 : 비과세 －대기업 고액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대기업주식 1년 이상 보유 : 20%(25%)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주주 20%) · 비상장주식 －대기업 고액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대기업 고액주주 1년 이상 보유 : 20%(25%) －대기업 소액주주 : 20%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주주 20%) · 파생상품 : 20% · 신탁수익권 : 20%(25%)

주식관련 양도소득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안건조세법전 요약 참조).

주 주 \ 법 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	30%	20%	30%	20%	30%	20%
	3억 이하	20%	20%	20%	20%	20%	20%
	3억 초과	25%		25%		25%	
일반 주주(장외거래)		20%	10%	20%	10%	20%	10%
일반 주주(장내거래)		0%	0%	0%	0%	20%	10%

각종 소득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시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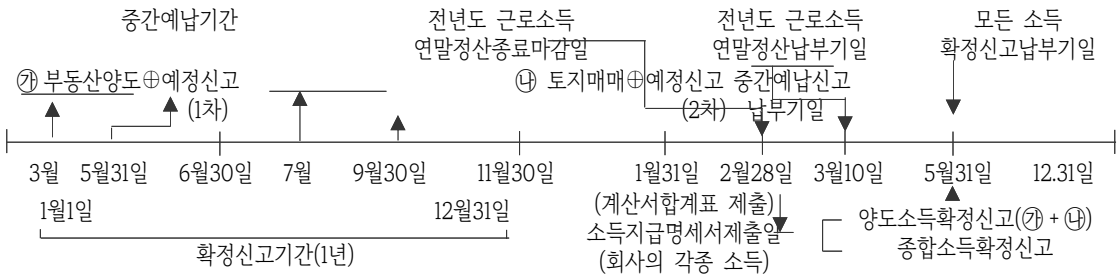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

유형·소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납부 기한	납세의무 확정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1. 1~12. 31	매년 12. 31	차년 5. 31	자진신고 납부일 (5. 31)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어떤 개인이라도 과세기간 모두 동일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1. 1~12. 31	매년 12. 31	매월 10일	2월 말일 (원천징수일)	3% + 미납부기간 하루당 0.022%≦세액×10%	소득지급시마다 징수납부함.
		연말정산은 차년 3월 10일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예정신고)	각 양도시점	양도월 말일	다음다음월 말일(부담부증여시는 3개월) 주식은 반기말 + 2달	자진신고 납부일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함.
	예정신고도 필수임.					
이자·배당 등 분리소득	각 지급시점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 지급시점	3% + 미납부기간 하루당 0.022%≦세액×10%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납세조합 가입소득	1. 1~12. 31	발생월 다음달 말일	징수월 다음달 10일	발생월 다음달 말일	5%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예정신고 · 중간예납 · 확정신고 · 연말정산 등의 관계와 시기

개인소득세의 신고납부 종류로는 토지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까지 신고납부하는 자산 등 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일반 직장생활인을 위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매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납부), 소득지급시마다 수시로 하는 원천징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있다. 이러한 신고납부 방법들은 각 소득의 발생특성, 계산편리 및 계속적·반복적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고 세금징수의 조기확보 목적을 위해 소득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된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하여 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1년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소득세 납세의무관련 신고납부시점을 2년간의 기간에 걸쳐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종합·퇴직·양도소득의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하는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래야 세무서가 알게 되고,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절세가능하다.

◦**종합소득의 중간예납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반적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인 전년도 총납부세액(=전년중간예납세액+확정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등)의 50% 상당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년도 세액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간의 거주자의 실제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해당기간만큼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간예납기준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매년 12월까지 소득 및 퇴직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이나 퇴직자의 퇴직월의 근로소득지급시 연말정산 절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평소에는 매월말 단위로 원천징수를 한다. 현실적으로 급여는 각 월간에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공제사항도 변동되기 때문에, 표준적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퇴직월이나 매년 12월말에 모든 사항 확정시 정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정산절차가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지급시 적법한 연말정산을 하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공제 및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를 전년도 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 종료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은 일단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일반 원천징수납부하며,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액

을 납부한다. 물론 3월 10일에는 2월분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적용 근로소득세와 합산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관련 세무의사 결정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개인은 자산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주식은 반기말)의 말일부터 2개월(다음 다음 달) 후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소재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도 의무규정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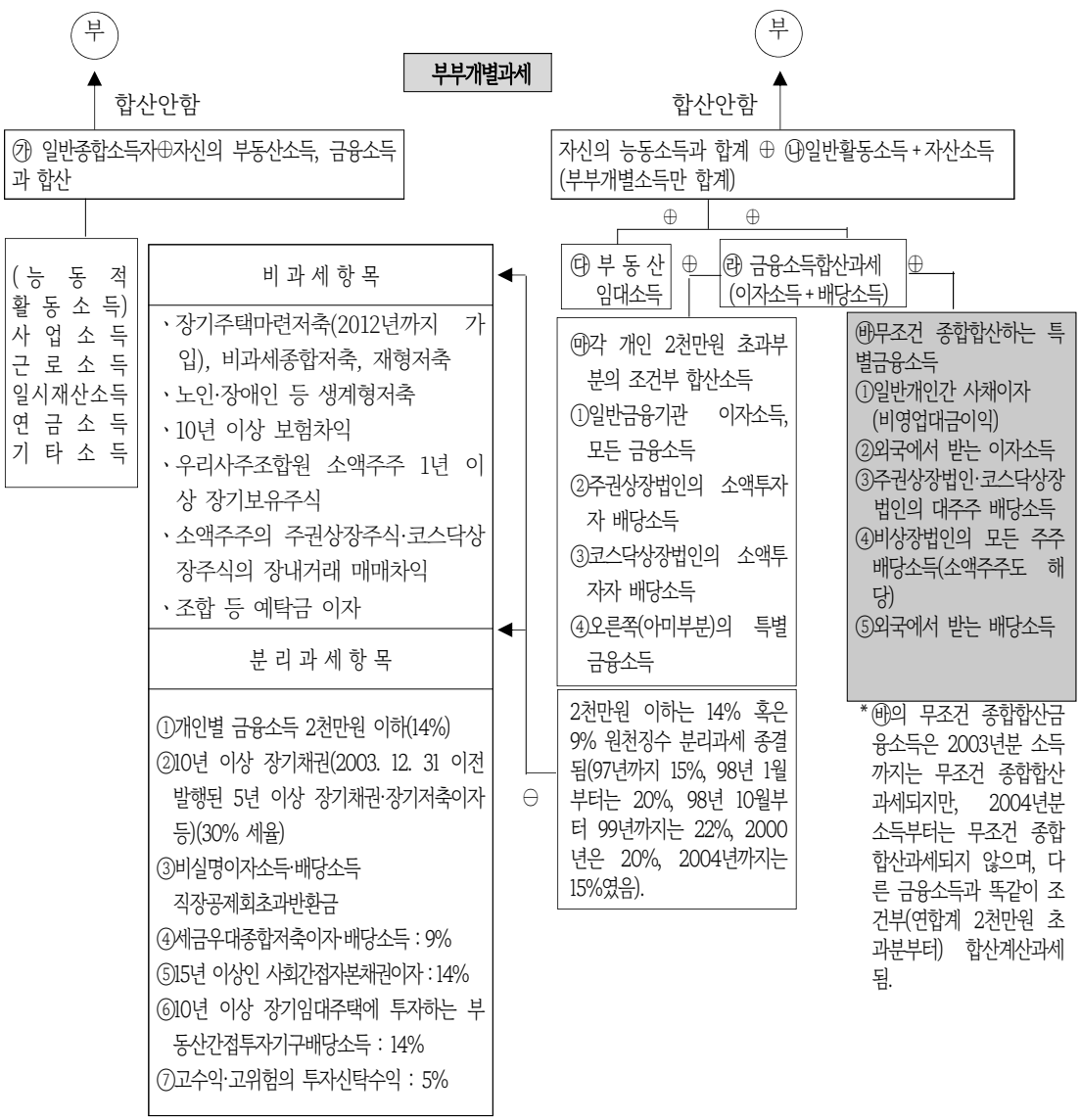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모든 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하세요!

각종 세무·회계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www.eanse.com

Ⅱ. 2025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점검사항



◦ 부부 중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은 각각 따로 자신의 능동적 일반활동소득과 합계한 후 부부는 자기소득만 따로 신고함.

◦ 각각 부부의 개별소득 ㉮와 ㉯는 각 부부명의 금융소득별로 별개로 집계하여 신고하며 부부합산과세가 아님.

2025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 관련절차 점검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① 종합소득신고서 제출과 납부마감일 :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 31, 지방소득세 납부도 같은 날짜임.

② 신고납부첨부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장부근거복식기록자 등)

③ 신고·납부불이행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미신고·초과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10만분의 22)

④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범위 : 모든 금융소득은 개인별 연 2천만원 이상 금액,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총액화가산(⊕11% 합산), 일시재산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에 모두 합산시킴(여러 차례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종합신고로 별도계산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님).

⑤ 종합소득신고합산주체 : 각자 개인(부부별산제) 자산소득[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자기명의만 합산신고하며, 배우자소득은 배우자소득으로 별도과세로 종결시킴. 자녀도 무조건 별도신고임.

⑥ 부동산임대수입은 임대료 실제수입 연간금액+[(임대보증금-건설비상당액)×1/365×정기예금이자율]인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지출입증비용을 뺀 나머지가 과세소득임.

⑦ 비상장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경우 : 회사근로소득(급여)+과세연도 중 배당소득+배당소득수입×총액화가산율(=11%)+다른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율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이자소득·배당수입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14%) 및 배당수입×총액가산율(11%)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함.

⑧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필수첨부대상 : 직전년 추계결정자, 직전년 개업자, 「조특법」의 공제·감면·소득공제적용자, 대규모사업자(임대·서비스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이상, 도소매·농축수산물 등 6억원 이상) 등은 회계사 등 전문가의 외부조정이 필수적임.

⑨ 분납가능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1) 기준경비율 적용 해당기간 : 직전년 귀속 소득에 대해 올해 6월 2일까지 신고하는 일반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적용함.

(2) 적용범위 및 불이익 : ①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 매출액기준 : 제조업 1.5억원 이상, 1차산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실제대로 신고함이 원칙임.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세액계산한 경우는 일종의 무기장이 되므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가산세 20%를 추가함(세액=(총매출액⊖입증주요경비⊖기준경비율에 의한 인정경비⊖기본공제 등)×적법누진세율

(6%~45%)×120%) : 가산세는 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됨)

② 간편장부의무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신고함. 장부나 증빙이 없어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무기장가산세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20% 가산세가 있음(세액={총매출액×(1−기준경비율)−실제입증경비}×개인누진세율×120%).

*간편장부 대상자가 법대로 간편장부기장하면 오히려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음(세금 20% 감액).

③ 기준경비율로 실제입증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액에서 뺄 공제액은 가족당 기본공제(인원수×150만원)와 추가공제(건당 100만원 등)만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실제지출 특별공제 등은 적용 안됨.

(3) 기준경비율은 해당업종의 원가율을 평균적으로 반영하는바 실제기장으로 계산한 소득세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적게 계산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

① 복식부기의무자(중규모 이상) : 실제기장소득×세율≦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비용 적용소득×일반세율×120%(가산세가 20%)→실제기장을 선택함. 그러나 반대의 경우이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함.

② 복식부기 아닌 간편장부의무자(소규모) : 실제기장소득×세율≦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비용 적용소득×세율×120%(가산세 20%임)→실제기장을 선택함. 그러나 반대의 경우면 기준경비율 방법을 선택함.

(4)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신고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함.

ㆍ일반사업자의 기준경비를 초과하는 실제입증 경비의 대응적용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인정은 못 받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비용인정 받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남.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지급조서 등 적법요건을 갖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에 의한 자동인정비용
(=수입금액×기준경비율)

ㆍ아주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차감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인정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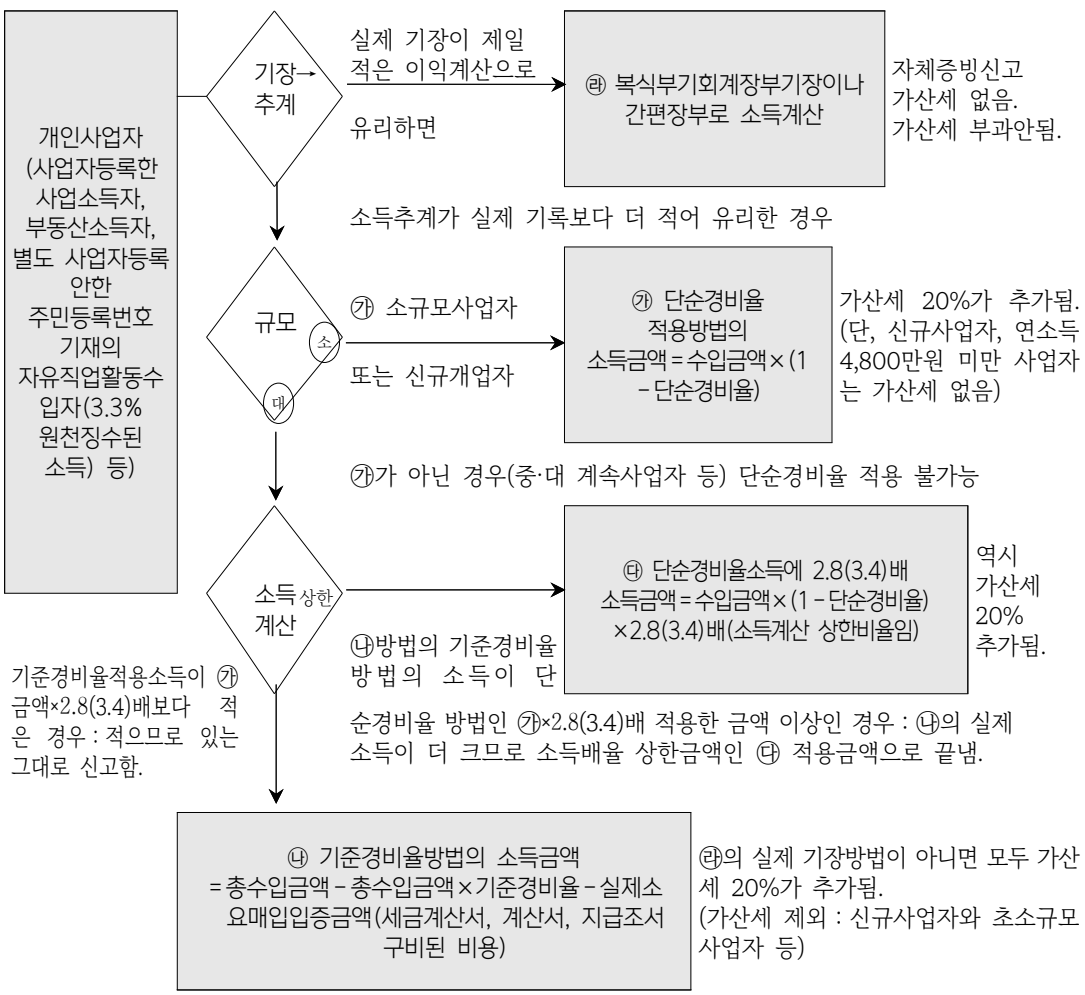
(5) 실제기장과 기준경비율 선택의 유리·불리한 상황비교(세액이 너무 적으면 실제매출·매입에 대해 과세관청의 실사가능성 있음)

- 매출액은 크지만 경쟁심화로 이익이 아주 적은 경우 : 실제기장이 유리함(그러나 실제이익이 너무 많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
- 매출액은 큰데 기준경비율이 높은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함(그러나 기준경비율이 낮다면 실제기장이 유리).
- 매출액은 작은데 실제결산이익은 많은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
- 매출액은 작으며 실제이익도 적은데, 반대로 해당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으면 : 실제기장이 유리함.

Ⅲ.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표 적용방법

■ 2025년 귀속 개인소득의 실제소득,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계산의 선택흐름도

2025년 귀속소득의 각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공표됨.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의 소득상한배율은 2.8(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임(추계신고시의 최종신고소득=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2.8배까지가 최고한도임).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2025년의 종합소득계산방법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장부나 증빙에 근거한 실제기장이 원칙이지만 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대응비용의 합계로 계산하거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예외를 인정(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계산·적용방법

다음의 ㉮·㉯·㉰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회계기장소득이 아니고 추계방법이며, 추계하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에게 20% 가산세가 추가됨. ㉱는 복식부기 등 실제 기장방법이므로 가산세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연도 신규개업자, 직전년도 수입(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① 농·수렵·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②·③ 제외한 경우는 연간 6,000만원 미만, ②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가스·수도, 건설,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자 등은 연간 3,600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

◦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의 연도별 기준비교 ◈

연 / 업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년부터	일반적 복식부기의무자
① 농업 등	1.5억원	9,000만원	7,200만원	6,000만원	3억원
② 제조업 등	9천만원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1.5억원
③ 서비스업	6천만원	4,8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7,500만원

㉯ 기준경비율과 실제소요비용 적용대상자 : 상기 신규사업자·소규모사업자 아닌 모든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매입비용(원부자재·제품·상품 등이며, 고정자산 구입비용(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은 제외됨)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리스료·지급임차료·렌탈료 등)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 금액 +종업원급여·임금·퇴직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작성되어 세무서에 소득자료로 제출된 금액)

㉰ ㉯방법의 기준경비율 등 적용소득금액이 ㉮의 단순경비율 적용소득 금액보다 너무 큰 경우

즉,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인데, ㉯방법에서 실제소요입증비용이 너무 적어 기준경비율만 빼면, 단순경비율만



뺀 경우에 비해 기준소득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배율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배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가산세 20% 추가 : ㉮와 ㉯·㉰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다단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에 20%의 가산세(실제기록이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함)를 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의무자 모두 다 실제기장 아니고 기준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가산세는 20%이다. 그러나 신규개업자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 방법으로 세액계산해도 가산세 20%가 없음.

㉳ 실제기장(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 : ㉮·㉯·㉰의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수입과 실제 기록한 지출·비용에 의거 실제기장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면 당연히 무신고·무기장가산세 20%는 없음.

◦ 간편장부 적용자(산출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줌), 당연도 신규개업자, 기준규모 이하 사업자(농업(①) 등은 3억원, 제조업(②) 등은 1.5억원, 서비스업(③) 등은 7,500만원 미만 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적용대상자 아닌 모든 사업자에 해당

◦ 간편장부란 매출액·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 증감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이면 됨.



■ 방문(외판)판매, 판매성과 등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기타자영업의 소득계산 사례

각종 인적용역 중 종사하는 사업활동인의 숫자가 많은 기타자영업 중 서적판매원, 학습지회원모집인, 방문교육자판매원, 정수기외판원, 화장품외판원, 기타외판원 등과 같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소득(코드번호 : 940908,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75.0%·초과율 65.0%, 기준경비율은 17.6%)

이러한 직종은 대부분 소득자본인(1인)이 직접 활동하며, 외부로부터의 직접 매입경비(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입증)나 하부·보조조직에 대한 원천징수소득(근로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이 없는 경우임. 따라서 자신의 실적급여총액(수입금액)에 대해 실제대응입증경비와 기준경비율 비용을 뺀 기준경비율 적용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해당 금액을 뺀 단순경비율 적용소득금액에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소득상한배율)를 곱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소득이 너무 큰 소득금액이 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인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곱한 금액이 최대신고소득으로 귀결됨.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부터는 초과율을 적용함.

또한 1년간 총수입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된다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의무도 없어서 산출세액 20%의 추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연 4,800만원보다 커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소득금액에 미달되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가산세 없음).

외판실적소득의 총수입금액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계산예시(배우자의 연말소득(100만원 이상)이 있어 본인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함)

총 액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성 별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한 소득, 입증경비 100만원(대중교통 1년권) 가정	5,000만원−5,000×22%−100만원=38,000,000	4,000만원−4,000×22%−100만원=30,200,000	3,000만원−3,000×22%−100만원=22,400,000	2,000만원−2,000×22%−100만원=14,600,000	1,000만원−1,000×22%−100만원=6,800,000
㉯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2.8	[{4,000×(1−0.75)}+{1,000×(1−0.650)}]×2.8=37,800,000	4,000×(1−0.75)×2.8=28,000,000	3,000×(1−0.75)×2.8=21,000,000	2,000×(1−0.75)×2.8=14,000,000	1,000×(1−0.75)×2.8=7,000,000
㉮와 ㉯ 중 적은 금액 선택가	37,800,000	28,000,000	21,000,000	14,000,00	6,800,000
㉰ 소득자 1인의 공제금액(150만원)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여성소득자인 경우(추가공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6%) 산출세액(1천200 초과시 15%)	과 표 35,800,000	26,000,000	19,000,000	12,000,000	4,800,000
	세 액 4,290,000	2,820,000	1,770,000	720,000	288,000
㉳ 3% 원천징수된 선납세금	1,500,000	1,200,000	900,000	600,000	300,000
㉴ 종합소득신고납부(여성기준(환급))	2,790,000(추가납부)	1,620,000(추가납부)	870,000(추가납부)	120,000(추가납부)	⊖12,000(환급)

Ⅳ. 2025년 귀속 소득의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1. 경비율제도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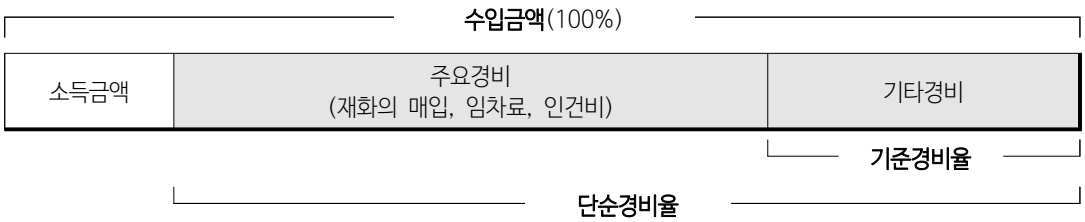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 ④)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143④)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143⑦)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을 적용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 § 128조①)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 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 § 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소득령 § 143⑥, § 208⑦)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외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금액}}{\text{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 § 208⑤2, § 143④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 § 144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 § 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득세법 §73①4, 소득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의2①, 소득령 §201의11④, 소득칙 §94의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율(1-단순경비율)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 §201의11⑩)

6.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 × 75.0%)} + {5,000천원 - (5,000천원 × 65.0%)} = 11,750천원

7.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소득령 § 143③1호 다목 단서)

*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5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5년 기준경비율 21.0%의 1/2인 10,50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 § 70④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 § 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 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 § 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 § 67)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귀 속 /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2015	2016-2019	2020-2027
간편장부대상자	2.0배	2.1배	2.2배	2.4배	2.6배	2.8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2.6배	2.8배	3.0배	3.2배	3.4배

【문】 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4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5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 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4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계산례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9. 주요경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1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



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10. 주요경비의 증명(소득령§143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Ⅴ. 2025년 귀속 소득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표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3. 일반적 적용례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제3호에 따르고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른다.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동업자단체 ·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2024.1.1.)에 따른다.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2024.9.13.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해당* 되는 사업자 및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인 사업자

- 아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귀속연도 / 기준수입금액 / 업종구분	'25년 귀속	
	직전연도 ('24년)	해당연도 ('25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 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 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소득금액 계산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11,750천원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0.3=90.0)

(3) 다음 업종(코드)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임업 및 어업	011000~052200	광업	(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410000~410001
건설업	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	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	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	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	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	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	950001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 :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 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100-90.3)×20%=92.2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그 후 해당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가.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개년에 걸치는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해당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월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법인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따른다.

Ⅱ.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 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0	농업 /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0.0		0.0
011001	농업 / 채소작물재배업	93.5		9.7
011102	농업 / 화훼작물재배업	93.5		5.4
:	이하생략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2026. 3. 30. 국세청 고시 제2025-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3. 30.부터 시행한다.



Ⅲ. 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 · 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 9. 13.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순경비율로 소득계산서에 가산하는 배율]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율로서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 상한으로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를 적용하도록 세법*에 명시하였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업종분류해설 및 유의사항

1. 업종분류 해설

가. 분류원칙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 2024.1.1.)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1)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였다. (예) 건설, 위생, 운수, 주류 등

(2) 제조업 등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 세분하고 사업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기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상 독립된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과 산업구조상 가중치가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은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나. 업종분류체계의 구조

(1) 경비율 업종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의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4단계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업종코드는 업종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코드체계를 유지하였다.

(2) 코드번호는 10진분류법을 사용하고 각 분류단계에서는 1~9까지 부호를 사용하여 각 분류를 9개 항목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되, 분류대상 종목이 많아 코드의 여유가 없는 종목은 유사종목 또는 인접종목의 코드번호를 취하여 세분하였다.

◈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

<참 고>

코 드		표 준 산 업 분 류	
자릿수	코드번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①	C	대 분 류	제 조 업
②	15	중 분 류	음 료 제 조 업
③	155	소 분 류	알 콜 음 료 제 조 업
④	1552	세 분 류	발 효 주 제 조 업
⑤~⑥	155201	품 목 분 류	탁 주
	155202	〃	약 주

2. 업종적용시 유의사항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태 구분

업태의 정의 및 타산업과의 구분 등에 대한 해설을 해당 업태 단위로 주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중분류 단계에 대한 업종구분 규정을 두었다.

나. 업종분류시 특히 유의할 종목

(1) 업종분류시 종목간에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사항은 업태단위 또는 중분류 단위 해설란에 세세분류 단계 이상으로 수록하였다.

(2) 구체적인 품목마다 적용착오가 예상되는 종목은 코드번호별 적용범위란에 별도 표시를 하였다.
(예시) ＊인삼식품(→ 154906) ＊인삼주(→ 155103)

(3) 실무적용 편의를 위해 별도 표기한 유의종목의 코드번호가 6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분류 단계에서 해당종목을 확인하여야 한다.(위의 예시의 경우 세분류 단계인 증류주 및 합성주(1551)에서 인삼주 코드확인)

다. 적용범위란에 열거된 품목 또는 적용범위는 해당코드 종목 중에서 산업비중이 비교적 크거나 상품학상 주요종목 위주로 예시한 것이므로 열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종목코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 01. 농업

1. 개 요

가.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나.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은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라.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중분류 02. 임업

1. 개 요

이 분류는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임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나.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분류하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한다.

중분류 05. 어업

1. 개 요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어로어업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어업은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로어업 및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나.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 된다.

01. 농 업 (※변경된 내용은 진하게 표시함)

011. 작물재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
01100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93.5	9.7
011002		화훼작물 재배업	93.5	**4.3**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93.5	5.9
011004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93.5	**4.1**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93.5	9.0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93.5	**12.9**
011007	시설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 작물 재배업	93.5	4.4
011008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93.5	14.4
01100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93.5	9.4

012. 축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012101	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97.2	7.8
012104		젖소 사육업	97.2	8.5
012102	기타 축산업	말 및 양 사육업	91.8	8.0
012103		그 외 기타 축산업 (사슴, 토끼)	88.0	5.9
012105		그 외 기타 축산업(개)	88.0	5.9
012204		그 외 기타 축산업	93.9	7.5
012201	양돈업	양 돈 업	96.5	8.6
01220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양 계 업	95.9	7.8
012203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94.2	8.4

01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93.7	20.0
014302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지원서비스업	93.7	29.9
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93.7	17.8

014.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93.7	12.0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80.0	14.3

02. 임 업

020. 임 업

020100	영림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91.3	7.3
020101		육 림 업	91.3	9.6
020102	임산물채취업	임산물 채취업	91.3	14.4
020200	벌목업	벌 목 업	90.5	21.0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90.5	17.2

05. 어 업

051. 어로어업

051102	해수면 어업	연근해 어업	96.8	20.0
051104		원양 어업	96.4	18.8
051200	내수면어업	내 수 면 어 업	93.5	8.1

05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01	양식어업	해수면 양식 어업	95.3	8.9
052103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92.7	7.2
052104	양식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95.5	9.0
052200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95.3	8.2

대분류 B. 광 업

1. 개 요

가.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은 "비알콜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수도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토공사업"

1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01. 석탄광업

101000	석탄광업	석 탄 광 업 *석탄 조광권자(→143106)	96.9	18.9

1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0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01001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96.9	18.9

13. 금속광업

131. 철광업

131000	철광업	철 광 업 * 철 조광권자(→143103)	92.2	23.6

131. 비철금속 광업

131003	비철금속광업	비철금속 광업	92.2	23.6

132. 비철금속 광업

132002	비철금속광업	비철금속 광업	95.5	23.6
132003		*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132002) *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채굴(→131003) * 연, 아연, 구리, 주석 채굴(→132002) * 금, 은, 동 조광권자(→143101) *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조광권자(→143101)	96.6	21.2

1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41. 토사석 광업

141001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직접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 생산(→141003) * 조광권자(→143107)	91.9	26.7
141002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조광권자(→143107)	94.1	39.9
141003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 채굴(→141001) * 조광권자(→143107)	89.4	26.7
141004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 조광권자(→143107)	88.3	39.9
141006		모래 및 자갈 채취업	94.1	39.9

14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2101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93.5	23.3
142102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납석)	94.2	23.3
142104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납석광 채굴(→142102) *조광권자(→143107)	93.5	23.3
14220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93.7	22.9
142902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토탄을 채굴·선광(→101001) * 활석, 동석 등 채굴(→142101) *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142101) * 조광권자(→143107)	94.3	21.4

1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4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42909	원유 및 천연 가스 채굴업	원 유 및 천 연 가 스 채 굴 업	94.3	18.9

143. 석탄 광업

143106	석탄 광업	석탄 광업(조광권자)	97.5	23.3

14. 광업 지원 서비스업

142. 광업 지원 서비스업

142910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94.3	18.9

14. 금속광업

143. 비철금속 광업

143101	비철금속 광업	비철금속 광업(조광권자)	97.5	23.3

143. 철 광업

143103	철광업	철 광업(조광권자)	94.9	23.3

1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43. 토사석 광업

143.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31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94.9	23.3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대분류 C. 제 조 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 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 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 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분류시 유의사항

【중분류】식료품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탁용 소금, 화학조미료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이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분말, 어분 및 동·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이곳에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중분류】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이 중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가.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나.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다.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
라.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 및 편물제품 제조
마.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리한 가공직물 제조
바.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이러한 제조활동은 자기소유의 섬유재료로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주문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산, 알칼리, 염, 기타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화합물 제조
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다. 추가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제조
라.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비누 및 화장품 등 특정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

【중분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제제 및 합성품, 천연약물 유효성분인 의료화학제제 및 원료형태의 항생물질, 약용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 식료품 제조업

15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종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151101	도축업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91.1	13.6
151103		가금류 도축업 *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임가공(→154803)	91.1	13.6
151102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154804)	90.2	5.7
1511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154804)	90.2	5.2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90.2	3.8

15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20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154805)	94.2	4.5
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94.2	5.4
15120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154804)	94.2	7.8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종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151203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4.2	**5.5**

15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0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업	92.3	8.4
151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154804) *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154805)	92.3	**8.7**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92.3	8.2

151.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15140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92.6	**2.9**
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 동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92.6	5.9
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92.6	4.1

15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5200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분유 및 조제분유)	94.9	6.1
1520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91.2	7.9
15200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91.2	6.1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3101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90.2	**10.8**
153102		곡 물 도 정 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154801)	97.5	3.0
153103		곡 물 제 분 업 * 떡방앗간(→154802)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 포함)(→154806)	92.6	6.0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종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15310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 제조(→153202)	92.2	7.8
15320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등 전분제품 제조(→153105)	89.8	7.1
153106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90.2	**8.8**

153.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5310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90.2	9.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0		배합 사료 제조업	96.0	9.9
1533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153104)	96.2	11.7

15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3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90.2	**8.3**

154.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54.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410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91.9	11.5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90.2	11.0
154104		빵류 제조업	90.2	13.8
15410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1.9	**9.4**
154200	설탕 제조업	설 탕 제 조 업	91.4	11.5
15440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94.2	10.0
154501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89.2	6.7
154502		장 류 제 조 업	91.5	9.7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5450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 조업	89.2	8.3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93.7	**9.3**
154901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 피 가 공 업	91.4	11.0
154902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94.1	**8.8**
154903		건 강 보 조 용 액 화 식 품 제 조 업 *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154805)	89.3	**11.9**
154905		차류 가공업	91.4	**10.1**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91.4	**10.2**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94.1	6.9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89.3	**14.3**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91.4	**10.4**

15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904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 산 식 물 가 공 및 저 장 처 리 업	94.4	**3.1**

154.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4801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 물 도 정 업	**90.3**	11.5
154802		곡 물 제 분 업	92.7	**10.4**
154806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91.2	6.8

15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3	도축업	도 축 업	92.3	**3.4**

15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3.1	6.0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4.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54805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92.0	**5.7**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 음료 제조업

155. 알콜음료 제조업

15510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 정 제 조 업	83.9	17.8
155102		소 주 제 조 업	90.9	17.0
155103		기 타 증 류 주 및 합 성 주 제 조 업	91.4	18.1
155201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81.6	15.1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약주)	89.1	16.2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88.4	17.2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85.3	18.1

155.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5540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85.7	14.4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탄산음료(→155401)	89.2	**10.0**
155403		생수 생산업	85.7	14.4
155404		얼음 제조업	89.2	14.4

16. 담배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160000	담배 제조업	담 배 제 품 제 조 업	94.3	16.1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7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세분류	종목 세세분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17110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화학섬유방적업	95.2	13.1
171102		면 방적업	91.1	17.6
171104		모 방적업	93.0	9.8
171105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실감기 임가공(→193001)	94.6	**5.4**
171106		화학섬유방적업(나일론사)	88.0	8.8
171107		화학섬유방적업(PVC사류)	92.4	8.8
171108		화학섬유방적업 * 인견사, 아세테이드사(→171101) * 나일론사(→171106) * PVC사류(→171107)	91.5	10.0

17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71109	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95.7	5.9
171112		모직물 직조업	94.3	12.1
171115		면직물 직조업	95.7	8.1
171116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95.7	8.1

17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711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기타 방적업	95.2	13.1
171114		기타 방적업 *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91.1	17.6

17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7120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193009)	94.6	9.4
1712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솜, 실 염색 임가공(→193009)	94.6	11.0
171202		날염 가공업 * 날염 임가공(→193009)	94.6	**10.0**
1712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94.6	9.3

17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세분류	종목 세세분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172101	직물제품 제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93.5	9.1
17210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94.0	**12.7**
172103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	93.3	9.8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3.5	**8.0**
172107		직물포대 제조업	93.5	9.8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수건(→172111)	91.0	8.7
17211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94.0	12.5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172108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93.5	5.5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20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제조업	91.8	9.8
172300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91.5	**4.9**
172301		끈 및 로프 제조업	91.5	9.6
172901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93.9	**6.5**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94.3	**8.6**
172903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93.2	13.9
172904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4.3	10.3
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94.3	10.3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편조의복 제조업

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93.7	12.9

1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3. 편조원단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73002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193001)	94.3	6.1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73004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 타 킹 및 기 타 양 말 제 조 업	94.6	7.7
173006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4.3	3.9
17300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장갑 편조(→173006)	93.2	10.3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101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 기성 제조(→181205)	90.4	9.6
181103	한복 제조업	한 복 제 조 업 * 개인맞춤 제조(→181209)	93.7	13.1
181105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 기성 제조(→181206)	90.4	7.1
18110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91.5	9.6
181110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1.5	5.7
181201		가죽의복 제조업	93.5	9.8
181203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94.4	11.1
181205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 개인맞춤 제조(→181101)	93.5	8.1
181206		여자용 겉옷 제조업 * 개인맞춤 제조(→181105)	93.5	7.8
181207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93.5	7.4
181208		유아용 의복 제조업	93.5	9.4
181209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 기성 제조(→181103)	93.8	9.9
18121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93.8	11.7

181.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81202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94.0	9.9
181204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8	8.8

182. 모피제품 제조업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89.2	9.1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9110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92.2	8.1
191200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93.4	11.4
191201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93.4	8.1
19120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93.4	9.5

19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92001	신발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93.5	7.5
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93.5	5.2
192005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93.5	5.8

1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93.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93. 편조원단 제조업
19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9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9300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93.8	12.6
	직물제품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9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93.8	10.1

19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93009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기 타 섬 유 제 품 염 색 , 정 리 및 마 무 리 가 공 업	91.1	12.2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일 반 제 재 업	92.0	7.4
201002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87.7	9.7
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90.4	10.2

202. 나무제품 제조업

20210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89.5	10.5
202102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92.8	9.6
202200	건축용 나무 제품 제조업	기 타 건 축 용 나 무 제 품 제 조 업	91.6	8.2
202201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92.1	9.6
20220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6	5.9
20220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92.1	11.9
202901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92.4	9.4
20290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91.0	5.3

202.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4.5	10.8

202. 나무 제품 제조업

202904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장식용 칠기(→202902)	92.4	9.8
202905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92.4	7.2

202.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 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92.4	11.4
202907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1.0	10.5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89.6	10.7
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91.3	9.6
21010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한지(→210112)	88.7	10.7
210106		펄프 제조업	89.6	10.7
21010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89.6	10.7
210108		위생용 원지 제조업	89.6	10.7
210111		골판지 원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91.3	9.6
21011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91.3	9.6

21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10200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93.0	5.0
21020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93.0	10.2
210201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6.5
21020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93.6	8.2
210204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210205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21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10206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3.6	10.2
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94.0	10.4
210902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92.4	16.2
21090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90.5	5.8
210905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90.5	7.1

2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22101	인쇄업	경 인쇄업	93.3	9.7
222102		스크린 인쇄업	92.5	10.8
222103		경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 프린트(→222101)	92.5	10.5
222104		오프셋 인쇄업	92.5	9.2
222105		기타 인쇄업	92.5	10.0
222201	인쇄관련 산업	제 책 업	90.6	14.2
222202		기타 인쇄관련 산업	89.6	11.7
222203		제판 및 조판업	89.6	7.3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	기록매체 복제업	기 록 매 체 복 제 업 *녹음업(→924901)	89.7	15.7

2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3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23100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 크 스 및 관 련 연 탄 제 조 업	95.3	21.7
231002		코 크 스 및 관 련 연 탄 제 조 업	98.2	21.7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100	원유 정제 처리업	원 유 정 제 처 리 업	91.1	10.5

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32.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32101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91.1	10.5

2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200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95.8	11.0
232201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95.8	11.0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1.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41101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수소 제조업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89.3	16.7
241102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90.7	16.7
241105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92.8	15.9
241106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91.4	10.3
24111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91.4	10.3
241114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91.4	10.3
241109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90.7	16.7
241115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91.4	10.3

241.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41200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91.4	15.0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91.4	16.7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91.4	16.7



24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413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합 성 고 무 제 조 업	92.8	12.4
241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9.6	**5.4**
241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89.6	9.5

242.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42101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85.1	9.4
24210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1)	92.0	9.4
242103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85.1	9.4
242104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가정용, 공중위생용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3)	92.0	9.4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20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회구류 및 유사 물감 제조(→242202)	89.2	10.4
242202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인쇄용 잉크 제조(→242201)	91.4	9.4
242203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92.8	9.4
24220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87.0	10.4
242205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89.2	10.4
24240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92.4	**10.2**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세탁비누 제조(→242401)	89.6	**10.8**
242403		화장품 제조업	84.8	11.5
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89.6	11.2
242405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89.6	11.2
242406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85.1	**5.9**
24290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88.7	7.8

2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903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95.3	8.6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89.5	9.5
242905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88.7	9.7
242906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성냥 제조(→369907)	88.7	9.7
242908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95.3	8.6
24290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88.7	**6.8**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2. 의약품 제조업

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생물 의약품 제조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85.8	11.9
242302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79.3	11.9

242.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303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242.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85.8	11.9

242.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42305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4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88.8	11.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4290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 그 네 틱 및 광 학 매 체 제 조 업	89.0	8.6

243. 화학섬유 제조업

243000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90.6	12.1
243001		재생 섬유 제조업	90.6	12.1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01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90.2	9.2
251102			94.2	10.0
251901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92.0	5.9
25190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89.0	7.0
251903		고무 패킹류 제조업	92.0	8.1
251904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89.0	12.2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0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89.2	11.6
25210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94.2	11.1
2521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92.8	5.6
25210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92.8	7.8
252106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92.8	11.1
25220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93.3	6.1
25220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93.3	10.6
252301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0.7	8.6
2523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0.7	10.7
252400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92.6	9.0
252401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92.6	9.8
252402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92.6	8.9
252901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92.3	11.4
252403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92.6	9.8
252404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92.6	9.8
25290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2.7	8.9
25290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252902)	93.1	9.5
252903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2.3	5.9
252904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2.3	13.0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0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86.4	11.3
261004		안전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5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9.5	10.9
261006	산업용 유리 제조업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7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8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9.5	10.9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61002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 판유리를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261005)	89.5	**10.1**
261009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5	10.9
261011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89.5	10.9

269.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100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88.6	**12.3**
269101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88.6	11.1
269102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88.6	4.5
269200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9	17.4
26920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9	17.4
269300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1.4
26930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2.4
269302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2.4

269.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26940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95.3	25.3
26940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플라스터 제조(→269403)	93.1	25.3
269403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석회 제조(→269402)	95.3	25.3
269501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91.9	18.8
269502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93.9	18.8
269503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0.2	15.9
26950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섬유시멘트(→269507)	92.3	**11.4**
269505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91.9	18.8
269506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3.9	18.8
269507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0.2	15.9
269508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제조(→269503)	92.3	14.3
		인조대리석 제품제조업		
26950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 재료)(→269506)	92.3	14.3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601	석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93.3	**9.8**
269603		기타 석제품 제조업	93.3	**7.5**
269901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89.6	12.1
269902		연마재 제조업 * 연마지 및 포, 연마사 제조(→269907)	94.4	**7.6**
269903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5.6	14.2
269904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2.3	14.2
269905		탄소섬유 제조업	89.6	12.1
26990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9.6	12.1
269907		연마재 제조업	92.3	14.2
269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면제품 제조(→269906)	92.3	14.2

27. 1차 금속 제조업

271. 1차 철강 제조업

27110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제 철 업	92.4	13.3
271102		제 강 업	88.8	16.2
271103		합금철 제조업	88.8	16.2
271104		기타 제철 및 제강업	88.8	16.2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271201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 제조(→271902)	91.6	7.1
2719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89.0	10.6
271902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접 형강 제조(→271201)	88.2	7.0
271202	철강관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91.0	15.1
271207		강관 제조업	91.6	11.2
271208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91.0	15.1
271204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91.6	11.2
271205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91.6	11.2
271206		철강선 제조업	91.6	11.2

27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광석의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272200)	86.6	12.4
27210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 동합금 제조(→272201)	86.6	12.4
27210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6.6	12.4
27210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6.6	12.4
2722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등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272100)	87.3	12.8
27220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 제련, 정련(→272101)	87.3	12.8
272202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또는 괴(덩어리)등 제련, 정련(→272102)	87.3	12.8
27220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납) 및 아연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 제련·정련(→272103)	87.3	12.8
272300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89.4	3.8
27230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89.4	8.3
27230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89.4	8.3
27290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88.8	13.5

273. 금속 주조업

273101	철강 주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90.1	17.3
273102		강 주물 주조업	88.8	15.7
273200	비철금속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90.1	6.1
273201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90.1	9.2
27320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90.1	9.2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100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5	9.0

281.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1101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사무실용 금속비품 제조(→289915) * 금고,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제조(→289918)	91.5	7.9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8110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91.5	8.5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103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91.5	11.4
28110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91.5	10.5
281105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91.5	12.3
281106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91.5	9.4
281201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제조(→281202)	88.4	11.4
281202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90.5	8.1
281204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90.5	13.3
281205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90.5	13.3
28130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91.0	15.7

28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910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91.1	8.7
28910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89.6	9.2
28910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91.1	5.6
28910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91.1	10.9
289201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87.7	8.2
28920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91.5	10.6
289205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87.7	9.4
289206		금속 열처리업	91.5	10.6
289207		도금업	91.5	13.0
289208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용접처리(→289201)	91.5	7.6
289301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94.5	3.8
289302		일반 철물 제조업 *자물쇠 및 열쇠 제조(→289305)	92.9	9.7
289303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91.6	7.9
289304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91.6	6.8
289305		일반 철물 제조업	91.6	11.0
289306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제조(→289301)	91.6	8.6
289901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92.0	7.8
289908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92.0	6.8
289910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92.0	12.3
289913		금속 스프링 제조업	92.0	12.3
289902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88.0	7.9
289903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92.4	7.5
28991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92.0	12.3
2899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2.0	12.3
289916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88.0	10.9
289917		금속 표시판 제조업	92.4	13.0
28991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2.4	5.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00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내연기관 제조업	91.9	8.7
29110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91.9	14.7
291200	유압 기기 제조업	유압 기기 제조업	89.6	6.3
291201		액체 펌프 제조업	89.6	12.2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29120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89.6	12.2
291300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90.7	8.1
291301		구름베어링 제조업	90.7	14.5
291401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88.6	16.8
291501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89.2	14.7
291502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91.1	8.2
291503		승강기 제조업	91.1	10.9
291504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91.1	7.7
29190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92.0	7.8
291908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89.9	11.8
291909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89.9	11.8
291911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89.9	7.7
291902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89.9	10.6
291903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89.9	5.9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90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89.9	8.3
291905		기체 여과기 제조업	89.9	9.7
291906		액체 여과기 제조업	89.9	7.6
29190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89.9	11.8

29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0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90.1	8.6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92.8	9.9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29220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89.8	8.9
292203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91.9	8.4
29220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89.8	9.4
292205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91.9	9.6
292206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91.9	7.7
292300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92.0	12.6
292400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90.1	7.7
29240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90.1	13.5
29250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89.9	6.8
292600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91.4	7.3
29260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91.4	12.1

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7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89.6	10.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01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 업 용 로 봇 제 조 업	89.6	8.1
29290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90.6	8.2
29290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90.8	13.5
292905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90.6	12.0
292906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90.6	12.0
292907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90.6	7.7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9290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0.8	13.6
292909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0.8	12.9

29. 전기장비 제조업

293. 가정용 기기 제조업

29300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89.7	7.0
29300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92.4	8.1
293005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89.7	10.6
293004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91.5	8.5

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300100	컴퓨터 제조업	컴 퓨 터 제 조 업	90.0	10.8
300101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90.0	7.0
30010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기억 장치 제조업	90.0	12.4
300103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90.0	12.4
300104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90.0	12.4

3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0201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 300202)	91.1	8.1
300202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2	11.0

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1. 전자부품 제조업

311001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91.5	7.9

31. 전기장비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11002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89.6	10.0
311003		변압기 제조업	89.6	11.2
31100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9.6	11.2
311005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89.6	11.2
311006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9.6	7.9

312.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31200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90.2	11.2
3120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90.2	12.0
31200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90.2	9.4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89.3	8.3
3130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90.1	7.2
313003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89.3	10.4

314.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31400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90.7	14.6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314001		일차전지 제조업	90.7	14.6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01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91.4	7.1
31500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88.2	11.5
315005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91.4	11.4
315003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91.4	11.4

319.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9001	조명장치 제조업	운 송 장 비 용 조 명 장 치 제 조 업	90.0	7.5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1900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0.5	7.0
319003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90.5	13.1
319004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90.5	13.1
319005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90.5	13.1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반도체 제조업

32100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90.7	10.2
32100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0.7	12.8
321003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0.7	12.8
32100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90.7	12.8

321. 전자 부품 제조업

321001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90.7	11.2
321013		전자 축전기 제조업	90.7	12.4
321014		전자 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90.7	12.4
321015			90.7	12.4
321016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90.7	7.2
321005	표시장치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6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7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8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90.7	7.8
321009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90.7	12.4
321011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90.7	12.4
321012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90.7	4.9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2200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90.6	9.2
322003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90.6	11.3
322004		이동 전화기 제조업	90.6	11.3
3220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90.6	8.4

32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2300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91.2	9.7
323005		텔레비전 제조업	91.2	12.2
323006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91.2	12.2
323007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91.2	5.6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00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89.6	14.1
331103		방사선 장치 제조업	89.6	14.1
331101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과기공물 제조업	74.1	14.2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33110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9.6	12.7
331104		치과용 기기 제조업	89.6	14.1
331105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치과 가공소, 의치 제조 (→331101)	89.6	14.1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	89.6	14.1

33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33120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90.5	7.3
331203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90.5	11.4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3120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90.5	8.3
33120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90.5	11.4
331206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90.5	8.0
331207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90.5	11.4
331300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89.6	10.8

33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000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제조(→332002)	90.5	9.4
33200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91.0	12.8

332.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01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91.0	10.2
332003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91.0	12.8
332004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91.0	12.8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91.3	11.9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01	자동차 제조업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89.6	11.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41003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89.6	12.7
341004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89.6	12.7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4200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89.6	8.6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89.6	10.0
3420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89.6	11.1

34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43000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6.5
3430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2
34300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9
34300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4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5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90.6	10.2

34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43007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90.6	10.2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0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강선 건조업	94.5	11.0
351102		기타 선박 건조업	95.4	5.4
35110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94.1	10.3
351105		기타 선박 건조업	94.5	12.8
351106		합성수지선 건조업	94.1	12.8
351107		기타 선박 건조업 *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2)	94.1	12.8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51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94.1	10.6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00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90.2	14.4
3520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90.2	14.4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5300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91.4	14.4
353003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91.4	14.4
35300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91.4	14.4
3530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90.5**	**11.0**

35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100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89.6	10.4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592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90.5	**5.4**
35920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90.5	13.0
359201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90.5	13.0

36. 가구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01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91.9	**10.0**
361003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92.8	**8.5**
361002	목재 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90.3	**10.3**
361007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90.3	**5.8**
361005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90.3	9.8
361006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90.3	**9.5**

36. 기타 제품 제조업

36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0	5.8
36950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90.4	11.7

369. 악기 제조업

369200	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제조업	90.2	**6.3**
369201		건반 악기 제조업	90.2	10.3
369202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제조업	90.2	10.3

36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01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91.0	**9.4**
369302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89.1	**9.1**
369305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91.0	12.8
369306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91.0	**8.4**

36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01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3.2	15.5
369402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 369401)	91.0	**15.0**
369404		영상게임기 제조업	91.0	13.1
369405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 369409)	91.0	13.1
369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2.0	13.1

36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502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0.9	13.4
369504		표구 처리업	87.6	**6.1**
369505		전시용 모형 제조업	90.4	**14.6**
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86.3	**10.5**
36990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92.2	**12.0**
369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92.2	**6.3**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69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2.8	7.2
369905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92.0	8.7
36990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91.2	11.8

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6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69907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1.2	12.4

36. 기타 제품 제조업

369. 기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우산 및 지팡이(→369904)	91.2	9.9

38. 기타 제품 제조업

381.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81000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90.6	10.3
38100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90.6	12.9
381004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부품 제조업	90.6	8.1
381005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0.6	10.8
381006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90.6	13.2
381007	기타 소사장제	기타 소사장제	90.6	11.3

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22102	일반 기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9	11.9
922103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88.9	16.7
922106	일반 기계류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9	9.5

대분류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가.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연료용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냉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01. 전기업

401000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94.6	23.8
401001		원자력 발전업	94.6	20.2
401002		수력 발전업	95.1	20.2
401003		화력 발전업	95.1	20.2
401004		풍력 발전업	94.6	27.8
		기타 발전업		
401005	송전 및 배전업	송전 및 배전업	94.6	32.8
401006	전기 판매업	전기 판매업	95.1	21.5

40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01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89.8	25.4

40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4030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7.0	27.1

대분류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개 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될 수 있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항목으로 분류된다.
나.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다.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으로 분류된다.

3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5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51104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3.5	15.0

3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7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71000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원료 재생업	91.6	14.0
37100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91.6	14.0

372.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72000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92.3	12.0
37200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2.3	13.3

37.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7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7200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92.3	13.3
372003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92.3	13.3

41.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410000	생활용수 공급업	생활용수 공급업	84.1	28.5
410001	산업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84.1	28.5

7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74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7493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85.5	**31.4**

9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900.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25.6**
90010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15.6
900104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15.6

900. 폐기물 처리업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88.0	**25.8**
900102	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88.0	20.4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88.0	16.6
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88.0	16.6

9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00200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84.6	**20.8**
900202		폐수 처리업	84.6	19.9
900201	분뇨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83.8	19.9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83.8	19.9



9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90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00300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87.9	15.6

대분류 F. 건 설 업

1. 개 요

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한다.

라.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각호에 따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나.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한다.

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

45. 종합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11.3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보유 5년 미만)	91.0	20.2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보유 5년 이상)	87.6	17.4
451105		단독 주택 건설업	91.6	14.5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6		단독 주택 건설업 *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11.3
451107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13.9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91.2	12.9
451108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91.6	16.5
451109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91.6	22.4

451. 토목 건설업

451200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89.6	20.3
451205		도로 건설업	89.6	22.8
451206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89.6	13.4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451204	토목 시설물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89.6	16.9
451207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89.6	13.4
451208		환경설비 건설업	89.6	16.8
451300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87.7	18.2
451400		조경 건설업	91.0	15.5

45. 전문직별 공사업

45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210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92.8	15.2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92.5	13.1
452105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인테리어 공사 등(→452106) *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장식 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88.7	15.9
452106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88.2	13.8
452107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벽지 부착공사(→452105) *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91.2	15.2
45212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92.5	16.5
452129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88.7	18.1
452200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93.4	19.3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03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91.1	17.0
452110		토공사업	92.8	21.6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452130	기반조성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91.4	20.0
452108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91.4	20.2
452120		비계 및 형틀 공사업	92.5	21.4
452131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90.7	15.9
452109		수중 공사업	92.2	16.1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92.5	19.0
452118	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92.5	17.9
452119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92.5	14.8

45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21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91.2	17.4
452115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92.8	16.4
452116		소방시설 공사업	92.8	14.7
452124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91.2	18.7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52132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90.7	18.6
452201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93.4	18.1

45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52111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기타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90.7	15.1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92.8	18.3
45211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92.8	22.7
452114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조적 및 석 공사업	92.8	16.1
452122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91.1	16.9
452123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91.1	18.8



452.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52125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91.2	14.6
452126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91.2	14.8
452127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91.2	18.7
452128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91.2	18.0

453.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89.7	22.8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5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 개 요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자동차 매매중개 활동을 포함한다.

중분류 51, 74.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 제외)

1. 개 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 태

가. 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별개의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된다.

나.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의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처리하여 재생용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분류된다.

도매업 분류시 유의사항

(1) 다음 유형의 판매업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가)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용 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라)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마)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는 사업. 다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분류 50,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1. 개 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므로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철물 및 기계공구, 페인트,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2.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이 포함된다.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나.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양복, 커튼 등)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5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1. 자동차 판매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011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91.3	8.6
5012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92.2	3.8
5013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매매알선)	**81.3**	27.5
501302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판매대리)	80.9	30.4
501103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 각종 중고 자동차 소매(→501202) *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91.3	2.8
501202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 도매(→501103)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91.8	**2.4**
501303		중고 자동차 판매업	**85.1**	**19.7**

503.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01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93.9	4.5
503002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90.3	5.4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03003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04)	91.2	4.3
503004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3)	86.5	**8.4**
503005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84.6	**7.1**
503006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91.2	4.5
503007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기기 판매업 *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소매(→503010)	91.2	7.8
503008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13) *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 도매(→503005)	91.2	4.7
503009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86.5	4.9
503010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기기 판매업 *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도매(→503007)	86.5	3.4
503013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86.5	**6.0**

504.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5040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93.7	**4.0**
5040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88.7	**4.9**

50. 소매업; 자동차 제외

505. 연료 소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05001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96.4	1.6
505002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94.3	4.4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1. 상품 중개업

511111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농·축·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86.2	5.4
511112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84.0	**11.8**
51111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청과물)	86.3	6.8
511114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수산물)	87.0	4.1
51111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80.4	17.3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82.4	17.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7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79.1	**18.5**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11117	상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사업관련주선(→749903)	79.1	20.5
51111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80.9	18.6
511119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 940909)	78.0	23.1
51112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 급식빵, 우유보급서비스 제공)	88.6	4.5
51112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86.7**	5.3
51112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도매시장 중매인)	**87.2**	**5.2**

51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12111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97.3	2.6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98.9	1.4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92.0	**4.5**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94.9	2.5
512120		사료 도매업	94.5	**6.7**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89.8	**5.4**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92.6	6.1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96.3	2.6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89.8	3.6
512140		육지 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97.3	**2.8**
512190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93.9	3.5
512192		육지 동물 및 반려동물 도매업	93.9	4.0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2221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일반)	95.8	3.8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법정도매시장)	96.3	2.2

51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12116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7.3	3.1
512211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 과실(법정도매시장)(→512214)	95.9	**2.7**
5122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94.9	**1.5**
512214		과실류 도매업	97.4	0.8
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97.0	1.1
512223		육류 도매업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95.8	4.2
512224		육류 도매업	96.5	4.3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95.1	**3.6**
512232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95.8	3.1
512233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94.0	**2.8**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생선)	96.9	**1.4**
51223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냉동수산물)	97.7	2.7
512236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96.9	**2.0**
512281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96.5	2.7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2241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5.6	**3.2**
512242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5.7	4.4
51224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3.4	**4.7**
512244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95.1	**4.6**
512245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95.1	3.5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95.8	2.8
512272		조미료 도매업	94.9	**3.3**
5122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94.6	**5.0**
51227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7.1	1.6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12279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512274)	94.4	2.6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512295)	95.8	2.9
512282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94.3	3.8
512283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동물성유지제품(→512285)	97.5	2.3
51228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5.1	4.8
512285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91.1	2.2
51228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512288)	89.4	7.3
51228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3.2	3.1
512289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93.9	2.6
512290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96.5	2.7
512294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93.9	4.2
51229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3.9	3.9
512286	음료 및 담배 도매업	담 배 도 매 업	95.3	0.8
512251		주류 도매업	95.1	3.2
512252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512251)	94.7	4.5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93.7	3.6

513. 생활용품 도매업

51311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95.1	3.1
5131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3)	95.6	4.6
513113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2)	90.8	5.7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13119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카펫, 융단, 자리 도매(→513261)	94.0	4.2
513121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513130)	93.6	3.9
513130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겉옷 도매(→513121)	94.2	4.9
513131		유아용 의류 도매업	94.2	4.4
513132		속옷 및 잠옷 도매업	94.2	4.0
513150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93.7	4.4
5131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93.7	5.2
513261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94.3	2.8
513141	신발 도매업	신 발 도 매 업	93.2	2.8
513211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93.4	6.3
513230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미용기구 도매(→513295)	93.2	4.5
513241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90.6	6.7
513250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악기 도매업	93.4	4.5
513253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93.4	6.3

513.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13231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2.3	3.0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3221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92.3	4.2

513.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513263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93.5	3.2

513. 생활용품 도매업

513271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미용기구 도매(→513295)	93.2	6.0
513272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비전기식 이·미용기구 도매(→513295)	94.4	4.6
513290		생활용 가구 도매업	93.7	4.5

513.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13291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94.0	4.9

513. 생활용품 도매업

513295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93.7	3.1
513296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및 기구 도매업	93.7	4.4
513297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93.7	6.7

513. 기타 전문 도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3298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3.7	5.8
51341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4.0	5.2
513414	종이 원지, 판지,종이상자 도매업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94.0	4.0

513. 생활용품 도매업

513311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각종 한약류(→513312)	94.8	3.8
513312		의약품 도매업	89.0	3.9
513313		의료용품 도매업	91.3	4.7
513320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92.4	6.4
513330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95.0	4.2
513410	생활용 포장·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94.0	4.5
51342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94.7	7.8
513430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93.7	3.5
513911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 도매(→513913)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94.3	4.6
513912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92.6	2.6
513913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광학용품 등 도매(→513911)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92.2	4.9
513931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94.6	4.9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3920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92.7	**3.8**
5139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93.1	**5.4**
513921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93.1	**6.7**
51394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골프장비(→513942)	93.2	4.6
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8.1**	**3.5**
513945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93.2	4.1
513960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유모차 도매(→513297) *리어카, 휠체어(→515093)	93.7	**3.9**
513933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97.1	1.9
513934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91.9	**4.4**
513950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94.0	**5.7**
513992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93.2	**2.6**

514. 기타 전문 도매업

514111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7.2	2.2
514112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탄(→514111)	95.4	4.2
514121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6.0	**3.4**
514130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4.9	**5.7**
514122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3.7	3.3
514210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90.7	**3.4**
514220		1차 금속제품 도매업 *동관(→514292)	93.2	3.5
514232		1차 금속제품 도매업	95.6	2.8
514239		1차 금속제품 도매업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514232)	92.4	3.7
514240		1차 금속제품 도매업	91.3	3.9
514250		금속광물 도매업	93.2	10.0
514291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93.4	6.5
514292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연, 주물 도매(→514291)	91.6	3.7

514.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514312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93.3	**5.8**
514320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골재 등 도매(→51433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94.4	5.1
514321		유리 및 창호 도매업	94.4	**6.5**
514330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93.5	8.8
514350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도료 도매업	92.7	**4.5**
514361	냉·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92.2	4.8
514366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92.2	**5.8**
514370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92.2	7.1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4380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골재 등 도매(→514330)	89.0	**3.4**
514392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92.9	4.5
514393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92.2	4.8

514. 기타 전문 도매업

51491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1.1	4.8
514912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3.2	3.6
514916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93.2	4.6
51491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유황, 산소(→514911) *탄산나트륨(→514912)	92.2	4.8
514920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2.2	3.8
51493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업용 약품 도매(→514940)	96.6	**5.1**
51494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혼합·화학용 비료 도매(→514930)	95.6	3.6
514950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생고무(→514916)	92.4	4.8
514961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95.3	2.8
514969		직물 도매업	94.8	**4.4**
514971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공병보증금제 공병취급 수수료(→749940)	95.6	5.0
51499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2.0	**4.4**

51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5010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자동판매기(→513231) *가중기, 호이스트 도매(→515031)	91.5	**5.1**
515031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2.0	6.6
51505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91.4	9.5
515070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92.3	5.9
515074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92.3	**8.3**
515080		의료 기기 도매업	91.6	**5.3**
515081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91.6	5.2
51502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4.6	3.9
515030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2.0	**4.8**
515040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1.6	**4.8**
5150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1.7	**6.8**
51505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91.8	8.1
515060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90.0	**13.2**

515. 생활용품 도매업

515093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91.7	8.0
519991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도매업	장 난 감 및 취 미 용 품 도 매 업	94.8	**5.3**

51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15094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91.7	8.0

519. 상품 종합 도매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대행수출)	94.0	5.3
519112		상품 종합 도매업 (직접수입 도·소매)	88.4	5.3
519113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2 이외 물품 도·소매)	85.2	6.8
519910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93.6	5.9

519. 기타 전문 도매업

519992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93.2	5.9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521. 종합 소매업

521100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95.2	2.8
521992		체인화 편의점	93.7	6.0
522071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92.7	4.6
521910	대형 종합 소매업	백 화 점	92.5	4.0
5219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91.3	4.0
521912		대형 마트	91.3	4.0
521913	면세점	면세점	91.3	4.0
521991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95.7	6.1

5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22011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96.3	2.2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93.7	4.6
522020		육 류 소 매 업	91.2	3.8
5220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93.7	5.1
522039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91.6	4.0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과일 및 견과류 등 소매(→522050)	94.1	2.6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소매(→522040)	93.7	3.3
522063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90.1	9.6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설탕 소매(→522062)	90.7	3.4
522062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95.3	4.6
522091		건강보조식품소매업	92.8	4.9
522080	음료 및 담배 소매업	담 배 소 매 업 *로또, 토토→749921	96.0	5.6

522.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522081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95.0	3.5

52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2092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86.3	3.5
52210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85.8	1.9

522. 음료 소매업

522093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 료 소 매 업(얼음)	86.3	3.3
522094		음 료 소 매 업 (알콜성음료)	89.1	3.6
522095		음 료 소 매 업 *얼음(→522093) *알코올성음료(→522094) *우유 소매(→522098)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522099)	88.3	5.1
522098		음 료 소 매 업 (우유)	93.4	3.6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2099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 료 소 매 업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음료품 배달원(→940907)	93.5	2.8

5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22096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522063)	88.5	5.2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101	가공식품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83.3	3.5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91.2	6.8

52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311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83.5	4.0
52311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80.4	9.4
52311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86.9	7.7
523120		의료용 기구 소매업	86.7	5.4
523131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87.2	8.3

523. 무점포 소매업

523132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 문 판 매 업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92.2	10.4

52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321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91.9	4.2
523214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91.1	4.5
523221	의복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90.2	6.8
523223		유아용 의류 소매업	90.2	5.2
523231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89.0	2.8
523233		남자용 겉옷 소매업	89.0	5.6
523234		여자용 겉옷 소매업	89.0	9.4
523235		한복 소매업	89.0	8.2
52323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89.0	7.0
523237		기타 의복 소매업	89.0	3.5
523241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88.1	4.1
523242		신발 소매업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91.2	6.0
523252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89.1	7.7
52326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피혁류(→523993)	89.2	5.9
523291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91.6	1.4
52329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88.5	7.4

523.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523311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92.0	6.1
523312		가구 소매업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 크 대(→523331)	89.5	4.4
523314		가구 소매업	89.2	3.2

코드 번호	종 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23321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92.8	4.0
523330		가전제품 소매업	90.1	4.2
52332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86.7	18.9
523331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90.6	2.9
523332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90.6	4.8
523341		악기 소매업	90.2	1.5
523349		악기 소매업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89.6	4.5
523352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88.7	7.7
52337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90.6	3.1

52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336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87.5	4.4
52336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90.1	3.1

52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523390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89.3	10.9

523.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523391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미용기구(→523982)	89.3	6.5

코드 번호	종 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523411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90.1	3.2
523412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 소매(→523411)	89.3	4.8
523413		공구 소매업	95.1	3.6
52342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86.6	6.7
52342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89.1	8.5
52349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시멘트)	91.9	6.1
523492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철근, 타일, 위생용도기)	88.9	4.3
523494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하드보드, 목재류)	89.6	3.5
52349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89.1	5.1

523.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52351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교구(초·중·고교용)(→523521)	92.8	7.2
523520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도장(인장류)(→523983)	90.1	5.7
52352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90.1	4.1

52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5235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88.2	7.9



52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532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89.4	7.3
52354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82.0	7.9
523550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87.2	2.1
523552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87.2	4.6

523. 연료 소매업

523611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연탄)	97.5	2.9
523612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무연탄)	96.1	3.0
523619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연탄, 연탄배달판매(→523611)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소매(→523612)	92.8	1.9
523621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95.1	2.1
523630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94.0	5.2

523.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523910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89.2	3.9
523981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우산, 양산)	90.6	1.3
52398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이·미용기구)	90.0	6.3

52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3921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88.5	5.1
52392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소매(→523923)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82.8	4.3
52392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소매(→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86.5	5.3

523.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931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89.1	3.6
52393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골프장비(→523931)	89.7	5.0
5239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90.1	4.4
523970	운동용품 및 자전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91.9	3.3
52398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90.1	1.3
523983	서적 및 문구 용품 소매업	문 구 용 품 소 매 업(도장 등)	86.6	5.9

52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3935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등산용의류)	89.7	2.7
523936		기타 의복 소매업(스포츠의류)	89.7	4.8

52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3951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523952)	88.0	8.6
52395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86.2	10.5
52396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89.9	9.0
523954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수석)	88.9	4.6
52398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우표)	98.3	3.3
52398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인지)	99.6	4.6
52398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소방기구)	87.7	4.6
52398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90.5	4.7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523987)	86.7	8.5

52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993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91.1	5.5

52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3994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91.7	3.0
5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비료)	96.6	7.1
523996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4.5	10.7
5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522092) *한약업사(→522105)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523994) *수석(→523954), 우표(→523984), 인지(→523985), 소방기구(→523986), 비료(→523995)	85.2	6.8
524010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87.9	5.9
524020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서적)	92.4	6.3
524091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철, 고물 등)	94.9	3.1
52409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90.1	7.2
524093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서적 소매(→524020) *고철 등 각종고물(→524091)	90.1	2.3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4000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85.2	5.6

524.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524001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 소매업 *농업용 기계공구,수공구 소매업(→523413)	85.2	11.4

525. 무점포 소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86.0	9.5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87.6	13.8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86.0	10.0
525104		SNS마켓	86.0	10.4
515105		해외직구대행업	86.0	15.6
525200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을 소매(→523132)	84.6	22.4
525300		계약배달 판매업	95.6	8.4
525910		자동 판매기 운영업	88.7	5.7
525912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86.3	8.6
525911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87.6	8.7

74. 도매 및 상품중개업

749. 상품중개업

749927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71.3	16.1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749. 기타 전문 도매업

749940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83.4	22.3

대분류 H. 운 수 업

1. 업태의 개념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관로(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분류되며, 철도 역사, 항구, 비행장에서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 분류된다.

다.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운송장비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육상 여객 운송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0100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95.1	24.5

601. 철도 운송업

601001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95.1	24.5
601002		철도 화물 운송업	95.1	24.5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1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83.0	21.1
602102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92.0	16.0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02103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93.5	26.0
602104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93.5	**30.9**
60210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85.6	**24.3**
60211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85.6	14.0
602201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90.8	24.3
602203		택시 운송업	86.0	22.8
6022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95.7	22.3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종운수수입금액		
602205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87.6	23.6
602206		택 시 운 송 업	95.7	**25.7**
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86.3	29.1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1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91.6	**25.1**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6023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1.1	26.9
602303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0.8	30.4
602304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86.2	28.9
602305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90.8	22.7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306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88.6	30.5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07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89.7	27.9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8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87.3	26.7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023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3.5	27.0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2.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0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 미만)(→602308) *지입(→630702)	91.6	25.9
602313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3.5	41.7
602314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90.8	27.4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5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1.6	31.4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6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1	37.8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91.9	27.5

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611001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93.3	27.5
611002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88.2	22.2
611003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88.8	24.8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88.2	28.8
611105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88.2	24.7

612.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61200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87.6	29.5
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88.7	25.2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88.7	25.2

6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1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기준
612003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88.7	25.2



62. 항공 운송업

621. 항공 여객 운송업

6210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97.0	23.5

621. 항공 화물 운송업

621001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97.0	23.5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101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89.2	**24.5**
630102		수상 화물 취급업 *강·운하, 항만내에서 화물 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92.4	20.5

630. 보관 및 창고업

630201	보관 및 창고업	일 반 창 고 업	**81.8**	22.5
6302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76.7	**21.0**
630203		농산물 창고업	76.3	**20.4**
630204		위험 물품 보관업	76.3	19.3
630205		기타 보관 및 창고업	81.0	**29.3**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30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91.5	25.2
63030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87.6	31.3
630303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82.8**	**17.3**
630305		물류 터미널 운영업	87.6	31.3
63030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85.3**	**37.9**
630311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81.3	19.5
630401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58.2	29.8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종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630403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0.2	34.7
630402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83.9	**17.0**
630405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83.9	25.2
63050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7.2	25.2
630501		공항 운영업	97.2	25.2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육상 여객 운송업

63070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78.7	**28.5**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630. 도로 화물 운송업

6307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80.3	**31.0**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86.5	**29.4**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관세사(→749906)	84.4	25.0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30903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84.7	20.5

6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63090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86.5	35.4

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85.2	**28.7**
630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82.1	**32.1**

6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41. 소화물 전문 운송업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93.3	**29.3**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749906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2.1	24.8
749930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77.2	16.7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1. 개 요

가.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여,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침대차 및 식당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철도운송업"

55. 숙박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100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 텔 업	87.1	**32.6**
551004		휴 양 콘 도 운 영 업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77.0	26.1
551002		여 관 업 *여인숙(→551009)	85.0	23.7
551005		민박업	82.9	**25.7**
551006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88.1**	22.9
551007		숙박공유업	84.6	**17.2**
551009		여관업	86.0	**21.3**
551010		휴양 콘도 운영업	84.9	21.2
551015		야영장업	87.4	**24.9**

551. 기타 숙박업

551016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87.7**	**16.1**
551017		그 외 기타 숙박업	**89.0**	22.6

55. 음식점 및 주점업

552. 음식점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2101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89.7	**9.7**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88.4	**10.2**
552103		일식 음식점업	86.7	**10.9**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	87.4	**13.4**
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86.0	13.1
552107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치킨 전문점	86.1	**12.0**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	91.0	**12.1**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90.0	**9.6**
552114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89.7	13.2
552115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89.7	11.0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89.7	**10.0**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86.0	14.6
552118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552309)	86.1	**15.5**
552119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86.1	**13.2**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91.0	14.9

55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201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	46.0	**11.6**
552202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64.6	**13.7**
552203		무도유흥주점업	56.5	12.5
552204		일반 유흥 주점업	84.2	20.5
552205		생맥주 전문점	88.2	**13.1**
552206		일반 유흥 주점업	56.5	**12.3**
552207	주점업	기타 주점업(단란주점)	58.4	13.1
552208		기타 주점업(기타 서양식주점)	**84.0**	15.4
552209		기타 주점업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88.7	**10.9**
552210		기타 주점업	88.2	13.3
552211		기타 주점업	64.6	**23.5**
552303	비알콜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87.5	15.1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89.0	**13.6**

552. 음식점업

552301	제과점업	제과점업	89.9	**10.6**
55230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87.1	**12.2**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87.1	15.2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87.1	**14.0**
552310	비알코올 음료점업	동물카페	87.5	**17.0**

대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개 요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가.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도 있다.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영상(영화 등)물, 음악 및 오디오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은 "인쇄업"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은 "기록매체 복제업"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온라인 인력 알선 등

22. 출판업

22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코드 번호	종 세 분 류	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221100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95.6	15.8
22110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94.7	18.1
221104		만화 출판업	91.8	14.2
221200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94.6	19.4
221201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94.6	33.4
22120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94.6	20.1

2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1.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22130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91.2	24.4

22. 출판업

22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90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92.6	18.9

64. 우편 및 통신업

641. 공영 우편업

641200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92.5	25.2

642. 전기통신업

642001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81.2	19.6
642002	기타 전기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83.9	28.2
642003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79.9	27.4

64. 정보서비스업

64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7.9	20.0

64. 우편 및 통신업

642. 전기 통신업

642005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81.2	19.6

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2100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5.0	23.4
721001		컴퓨터시설 관리업	78.1	26.3

72. 출판업

7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4.7
72200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2.7
722002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8.3	14.8
722003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9.5	27.5
722004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3.3

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5.2	26.0

72.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72. 정보서비스업

723.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72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23000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82.0	20.0
72300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80.5	19.0

724.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400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76.0	20.9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2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77.8	23.4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4001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76.7	27.0

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2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2900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82.2	22.8

9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2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92110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83.3	32.2
92120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82.4	22.7

92.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921. 라디오 방송업

921301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79.1	32.2

921. 텔레비전 방송업

921302	지상파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78.3	23.7
921303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 방송업	75.8	16.6

9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2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92130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8.6	27.6

92.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921. 텔레비전 방송업

921305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5.8	23.7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	88.6	41.9

9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2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150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2.0	**27.3**
92150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3	21.6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87.3	24.2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3	**15.3**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71.2**	**15.8**

924.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924901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녹음시설 운영업	**82.4**	**30.5**

924.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92491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81.2	15.1

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1. 개 요

가.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개발 금융·신용 카드 및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 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나.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된다.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운용리스는 "임대업"에 분류

나.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65. 금융업

659. 은행 및 저축기관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59201	일반은행	국내은행	71.7	17.6
659202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83.5	18.0
659205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71.7	21.8
659207	일반은행	외국은행	71.7	17.6

659. 기타 금융업

659203	여신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25.7	**18.5**
659204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40.9	32.8
659206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78.5	17.4
659208		금융 리스업	78.5	17.4
659209		개발 금융기관	78.5	17.4
659902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83.4	12.2
659904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79.3	17.4
659905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79.3	17.4
659906		지주회사	79.3	17.4

659.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59900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77.6	17.4
659903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77.6	17.4

66. 보험업

660. 보험업

660100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96.1**	**26.8**
660301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손해보험(→660303)	**86.9**	31.7

코드 번호	종목 세분류	세세분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660302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72.8	26.3
660303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70.6	26.3
660304	손해 및 보증보험업	보증보험업	70.6	26.3

660. 재보험업

660101	재 보험업	재 보 험 업	96.5	28.6

660. 연금 및 공제업

660307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70.6	26.3
660308		사업 공제업	70.6	26.3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71. 금융지원 서비스업

67120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99.8	8.0
67120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95.0	8.0
671203		선물 중개업	95.0	8.0
671900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85.1	**34.3**
671902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85.1	29.0
671903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85.1	25.3
671901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85.1	29.0

67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0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73.0	25.6
672001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3.0	20.7

7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49.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4990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73.6	**28.1**

대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개 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에 분류

업종분류시 유의사항

1.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취득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한다.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임대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종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37.4	**9.5**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61.6	**20.2**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42.6	15.5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17.2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 극장임대(→921404)	41.5	19.9
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36.9	**12.2**
70120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57.2	**27.2**
701204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42.3	18.5
701205		공유주방임대업	**60.4**	**5.3**
701206		공유오피스 임대	**59.0**	**25.8**
70130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4.8**
7013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11.3**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60.4**	7.1
701400		기타 부동산 임대업 *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14.6	**3.7**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50.1	**17.6**
7015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65.8	15.0
701503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50.1	**12.4**
701504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66.4	18.1

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02001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8.2	**23.4**
702002		부동산 감정 평가업	58.2	29.3
702004		부동산 투자 자문업	80.6	**30.9**
702003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4.2	**15.1**
702005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5.8	**21.4**

703. 부동산매매업(공급업)

7030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82.1	15.8
7030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0	**13.7**
703014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82.1	**13.0**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82.1	**14.4**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0	**8.0**
703017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0	10.0
7030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건설/토지보유 5년미만)	85.6	**22.2**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5년이상)	83.1	**17.3**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0302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시행사/보유 5년미만)	87.3	15.1
70302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시행사/보유 5년이상)	85.6	13.8

92. 부동산업

92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921404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85.5	21.8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개 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축산 동물 및 반려·애완동물 대상의 수의 서비스, 번역 및 통역, 매니저업 및 물품 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3. 연구개발업

73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3000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9.7	24.3
73000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9.3	23.9

73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300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9.3	22.1
73000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83.3	28.7
73000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80.2	23.2
730004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9.3	16.5
730005	공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9.3	22.4
730006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9.3	21.0
730007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85.9	27.0

73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3000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9.3	31.1

74. 전문서비스업

74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01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 호 사 업	44.6	15.9
741104		변 리 사 업	60.7	19.8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53.8	16.7
741107		법무사업	58.3	15.5
741108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51.5	27.3
74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	17.2

코드 번호	종 세 분 류	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741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66.1	**20.3**
741114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증인(→741106) *집행관(→741108) *행정사(→741109) *공인노무사(→741110)	**72.9**	**16.5**

74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120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	58.2	23.0
741202		공인회계사업	58.2	23.0
741203		세무사업(기장대리)	72.9	23.0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4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72.9	23.0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413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8.8	**30.8**

741.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741400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경영지도사(→741401)	77.3	**23.1**
741401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73.2	**26.3**
741403		공공관계 서비스업	77.8	**32.3**

7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210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측량업	72.3	23.5
742102		지도 제작업	74.2	20.6

74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42103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사(→742105)	**76.0**	23.3
742105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73.6	21.0
742107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7.3**	**27.7**
74210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	**23.3**

코드 번호	종 세 분 류	목 세 세 분 류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
742106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77.4	30.2

74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2108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제도업	72.3	**27.4**
74211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6.3	19.9
74220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술지도사(→742202)	76.0	24.0
742202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기술지도사)	80.2	28.8
742203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6.0	24.8

74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4210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사(→742106)	76.3	24.4
7421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	**21.8**

74. 전문 서비스업

743. 광고업

743001	기타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9.9	**16.5**
743002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79.3	**27.6**
743003	기타 광고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81.5	**36.8**
743004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81.4	**20.8**
743005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9.3	**29.5**

7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4940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예식사진촬영업(→930904)	87.1	21.2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87.1	**27.4**
749403		사진 처리업	87.1	22.8

74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902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7.5	**26.3**
749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7.9	28.3

749. 전문 디자인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9910	전문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78.8	19.1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	81.5	21.9
749915		제품 디자인업	82.0	21.0
749916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80.5	19.8

74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911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80.7	30.2
749912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80.9	29.3
74993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8	26.4
749941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03)	49.9	22.0

74. 전문 서비스업

749. 기타 전문 서비스업

749942	기타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81.9	25.2

8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2. 수의업

852000	수의업	수 의 업	65.1	12.6

9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930904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82.5	22.2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개 요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제공활동은 "대분류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은 "부동산 관리업"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화훼작물 재배업"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은 "조경건설업"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분류

14. 임대업; 부동산 제외

143. 무형 재산권 임대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32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88.0	18.4

52. 사업지원 서비스업

523.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5239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8.3	33.7

63. 임대업(부동산 제외)

630. 운송장비 임대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30304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82.5	29.7

63. 사업지원 서비스업

63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630600	여행사업	여행사업	84.2	31.0
630601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버스표(→523990)	86.9	27.8

65. 사업지원 서비스업

6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659901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70.3	14.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70. 임대업; 부동산 제외

701. 무형재산권 임대업

701600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67.2	14.3

71. 임대업; 부동산 제외

71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210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1.2	25.1
71220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79.6	24.8
71220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9.6	20.3
7122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9.6	15.3

712. 운송장비 임대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1220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8.5	23.9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01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84.9	23.3
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84.8	24.0
713004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83.4	14.6
713005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서적 임대업	86.6	19.0
713006		의류 임대업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85.8	22.7

71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300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3.2	24.4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49100	고용알선업	고 용 알 선 업	84.1	22.4
749101	인력공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83.7	24.7
74910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83.7	18.1

749.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492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5.0	25.7
749201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85.0	25.7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9.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93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85.5	21.6
74930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85.5	18.5

749.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9303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85.5	17.9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500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88.6	22.9
7496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84.1	30.0
7496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85.7	12.0
7496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91.4	22.6
7496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기타임가공)	88.4	20.0
7496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86.4	27.0
749901	사무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 및 복사업	81.5	21.5
749905		문서 작성 및 복사업 *속기사(→749901)	78.7	30.6
749909		복 사 업	85.2	18.1
749907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3.6	25.2
74991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81.7	21.9
74992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대리)	77.2	21.8

74. 임대업(부동산 제외)

749. 무형재산권 임대업

749934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47.8	10.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993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81.5	19.0
749937	사무 지원 서비스업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81.7	28.0
749938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84.8	40.8

9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0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9009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86.9	19.7

93. 임대업(부동산 제외)

930.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930903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85.1	20.2

93. 사업지원 서비스업

9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

930916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 정 및 조 사 서 비 스 업	83.8	37.7

93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30917	그 외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85.3	25.1

대분류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 공공 행정 및 국방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산업 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나. 사회보장 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 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을 포함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

* 해당 코드(841110~845000)는 비과세단체 내용 참조

6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60. 사회보장 보험업 및 연금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60305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보험업	70.6	26.3
660306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70.6	26.3
660309		연금업	70.6	26.3

대분류 P. 교 육 서 비 스 업

1. 개 요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마.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55. 교육서비스업

551. 기타 교육기관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10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7.8	29.9

74. 교육서비스업

741. 기타 교육기관

741402	직원훈련기관	직원 훈련기관	85.2	25.9

80. 교육서비스업

80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04101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	-

809. 기타 교육기관

809001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80.2	29.8
809002		기 타 기 술 및 직 업 훈 련 학 원 *가정계열학원(→809010)	83.3	**19.4**
8090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소(→921902)	84.1	21.8
809009	예술 학원	음악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81.8	24.8
809010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4.0**	**20.4**
809011		운 전 학 원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80.2	30.8

809. 일반 교습학원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809004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83.3	23.6
809005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80.0	**21.5**
809007	일반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78.0	**23.4**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809012	일반 교습학원	예 술 학 원 (예능입시전문학원)	81.9	25.1

809. 기타 교육기관

809013	그 외 기타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82.7	23.4
8090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1.1	**23.4**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4.9**	**22.8**
809017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83.2	23.7
809018		기타 교습학원	79.9	**28.8**
809020	예술학원	미술학원 *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83.3	22.7
809021		기타 예술학원 *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83.9	24.4
809022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4.2	**26.6**

809. 일반 교습학원

809016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83.2	**32.1**

92. 교육서비스업

921. 기타 교육기관

9219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6.9**	24.1

93. 교육서비스업

930.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3.3	**21.3**
93092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1.9	**27.8**

대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개 요

가.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은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나. 수의서비스 활동은 "수의업(대분류 M)"

85. 보건업

851. 병원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851101	병원	요양병원	78.6	19.0
851102		치과병원	63.6	21.5
851103		한방병원	67.5	23.4
851113		종합병원	78.6	19.0
851114		일반병원	78.6	19.0

851. 의원

851201	의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70.5	27.9
851202		일반의원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74.8	27.5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851203	의 원	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73.9	27.0
851204		일반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68.3	25.9
851205		일반의원(안과)	69.5	28.7
851206		일 반 의 원(이비인후과)	73.1	31.0
851207		일 반 의 원(산부인과)	65.0	22.8
851208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71.1	29.1
851209		일반의원	42.7	16.1
851211		치과의원	61.7	17.2
851212		한 의 원	56.6	18.9
851219		일 반 의 원 (기타의원)	67.1	15.0

851. 기타 보건업

851901	기타 보건업	그 외 기 타 보 건 업 (조산소, 조산업)	75.2	15.0
851902		유 사 의 료 업 *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77.5**	**19.0**
851903		유사 의료업	79.1	18.9
851904		유사 의료업 *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60.2**	11.1

851. 의원

851905	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70.4	15.8
851909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78.0	17.1

851. 기타 보건업

851906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83.5	15.6
851907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78.0	16.0
851908		유사 의료업	85.3	18.9
851911		앰뷸런스 서비스업	78.0	17.1
851912		안마원	85.3	19.6

93. 사회복지 서비스업

93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30914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 인 양 로 복 지 시 설 운 영 업 (실버타운)	54.0	**14.7**

95. 사회복지 서비스업

95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50002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86.6	**22.7**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연극제작 설비 임대는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에 분류

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분류

라.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

5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1229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 소매(→522082) * 각종 복권 발행(→924906)	95.3	**2.3**

5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2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2208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 도매(→512293) * 각종 복권 발행(→924906)	**93.6**	**8.4**



8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09. 스포츠 서비스업

809006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2	**23.3**

809.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80901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88.2	**30.7**

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85.0	26.1
921402	공연단체	무 용 및 음 악 단 체	94.3	27.9
921403		연 극 단 체	96.7	**25.6**
921405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83.5	**30.7**
921406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83.5	26.7
921407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94.3	**32.9**
921901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7.3	**21.5**

9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2190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4.0	18.2
921904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87.4	13.7

923.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3100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87.4	**18.4**
92310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83.9	16.2
923102	〃	독서실 운영업	87.4	22.5
923200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89.6	**23.9**
923201		사적지 관리 운영업	87.9	19.1
923300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87.5	19.7
923301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88.9	**19.4**

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스포츠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410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마주(→924102)	84.3	**43.6**
92410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5.3	**34.3**
924103		스포츠 클럽 운영업	81.6	**22.2**
924200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7.6	**21.1**
9242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82.7	18.4
924202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82.7	18.4
924302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88.5**	17.6
9243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 프 장 운 영 업	81.0	**28.9**
924304		스 키 장 운 영 업	**82.2**	22.6
924305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85.5	**27.4**
9243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3.4	19.6
924307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83.4	21.2
924308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88.9	**24.1**
924309		당구장 운영업	**85.7**	**16.6**
924310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7**	**19.9**
924311		수영장 운영업	83.4	15.6
924312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라켓볼. 스쿼시경기장)	82.4	26.0
92431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82.3	24.8
924314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 라켓볼 · 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 눈썰매장(→924310)	**89.0**	**18.5**

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4902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85.4	18.7
924903		노래 연습장 운영업	80.8	16.7
924904	오락장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75.1	17.9

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4.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4905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87.6	20.8

9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90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35.4	11.6
924907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실내운전연습실(→924912) * 청소년게임장(→924908)	75.9	9.1
924908		전자 게임장 운영업	86.4	12.4
924909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89.0	18.1
92491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88.6	17.4
924912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77.6	17.5
924913		기타 오락장 운영업	87.2	16.6
924914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88.7	12.9
924915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9.4	29.0
924916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5.8	17.5
924917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운영업	35.4	13.7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 개 요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나.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

70.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1.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1700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89.0	15.2

7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725.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72500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80.9	15.2

74. 기타 개인서비스업

74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7494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3.3	20.8



9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2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2101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0.9	21.2
922104	가전제품 수리업	가 전 제 품 수 리 업	89.4	17.1
922105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89.4	19.2
922108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89.4	23.3
922109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89.4	16.8

922.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통신장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88.9	20.9

92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2220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86.5	10.2
922202		자동차 전문 수리업	83.9	7.1
922203		자동차 세차업	84.9	14.0
922204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8.5	7.6

93.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0100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83.3	18.3
930101		산업용 세탁업	83.1	19.4
930102		세탁물 공급업	84.8	25.7
930301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75.2	14.8
93030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77.4	29.7
930901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예 식 장 업	79.2	15.0

93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30201	이용 및 미용업	이 용 업	82.7	27.3
930203		두 발 미 용 업	82.4	22.0
930205		피부 미용업	85.8	18.3
930207		기타 미용업	86.9	19.6
930208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85.8	22.3
93020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85.8	17.4
930902		욕 탕 업	87.5	16.7

93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0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3.7	24.6
930909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61.5	20.1
93091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8.3	21.5
930912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84.2	27.7
93091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84.6	16.6
930919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82.4	25.8
93092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 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86.8	21.9

94. 인적용역

940. 인적용역

코드 번호	종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 순		기준
			기본	초과	
940100	저술가	작 가	58.7	42.2	7.2
940200	화가 및 관련 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68.0	55.2	16.6
940301	음악가및 연예인	작 곡 가	49.7	29.6	5.8
940302		배우, 탤런트 등	29.0	10.6	5.9
940303		모 델	40.9	17.3	10.0
940304		가 수	13.5	4.2	5.7
940305		성 악 가 등	61.6	46.2	26.6
940500	연예보조 서비스	연예보조 서비스	70.9	59.3	16.2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64.1	49.7	12.1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58.4	41.8	7.6
940901		바 둑 기 사	62.6	47.6	16.9
940902		꽃 꽂 이 교 사	81.8	74.5	22.3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61.7	46.4	15.4
940904		직 업 운 동 가	54.5	36.3	15.7
940905		유 흥 접 객 원 및 댄 서	61.7	46.4	23.5
940906		보 험 설 계 사	77.6	68.6	28.5
940907		음료품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80.0	72.0	34.7
940908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기타외판원	75.0	65.0	19.9
940909	기타 자영업	기타자영업	64.1	49.7	17.4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67.8	54.9	14.1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67.7	54.8	15.8
940912		개 인 간 병 인	80.2	72.3	34.0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32.2
940914		골 프 장 캐 디	74.3	64.0	20.9
940915		목 욕 관 리 사	78.2	69.5	39.7
940916		행 사 도 우 미	69.8	57.7	15.5
940917		심부름 용역원	71.5	60.1	25.6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	79.4	71.2	19.8
940919		기타물품 배달원	74.2	63.9	27.6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75.0	65.0	31.5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75.6	65.8	28.6
94092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5.0	65.0	29.9
940923		대출모집인	67.5	54.5	28.6
940924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71.3	59.8	29.2
940925	기타 자영업	방과후강사	69.3	57.0	19.3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64.4	50.2	20.9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64.1	49.7	17.0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72.4	61.4	19.8
940929		중고자동차판매원	75.0	65.0	24.2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0.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코드 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5000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4.3	22.8

대분류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5. 가구 내 고용활동

950. 가구 내 고용활동

950001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79.7	31.3

대분류 U. 비과세단체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00	중앙은행	중앙은행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0	일반 공공 행정	입법기관
841121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1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1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0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0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교육 행정
842121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0		환경 행정
842140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0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842211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노동 행정
842221		농림수산 행정
842231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1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1		기타 산업 진흥 행정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0	외무 행정	외무 행정
843200	국방 행정	국방 행정

844.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0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법원
844020		검찰
844030		교도기관
844040		경찰
844050		소방서
844090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5. 사회보장 행정

845000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851100	유아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851200	초등학교	초등학교

852. 중등 교육기관

852110	일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852120	일반 중등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852210	특성화 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0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90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853. 고등 교육기관

853010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853020		대학교
853030		대학원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100	특수학교	특수학교
854300	대안학교	대안학교
856400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86. 보건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3000	공중 보건 의료업	공중 보건 의료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코드 번호	종목	
	세 분 류	세 세 분 류
871110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210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0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0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0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00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 제외)(→ 950002)
872910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872920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0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872990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00	산업 단체	산업 단체
941200	전문가 단체	전문가 단체

942. 노동조합

942000	노동조합	노동조합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49111	종교 단체	불교 단체
949121		기독교 단체
949131		천주교 단체
949141		민족 종교 단체 *천도교(→949142) *원불교(→949143)
949142		천도교 단체
949143		원불교 단체
949190		기타 종교 단체 *유교(→949191)
949191		유교 단체
949200	정치 단체	정치 단체

949311	시민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
949390		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0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949901) *종중(→949902)
949901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외국 공관
990090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국세청 -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포함)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물론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P.E. : 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 :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 : 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 : 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 : 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 · 종료 · 중단

국내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 :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 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국내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국내사업장으로 성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3-1】 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체 약 국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터키, 필리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페루	6개월 초과	6개월 초과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알제리, 파키스탄, 포르투갈, 핀란드, 카타르	6개월 초과	규정없음
쿠웨이트, 튀니지, 태국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브라질	6개월 이상	규정없음
모로코	8개월 이상	규정없음
그리스(자원탐사 6월), 몰타, 인도, 피지, 오만, 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에콰도르	9개월 초과	9개월 초과
슬로바키아, 우루과이, 조지아, 체코	9개월 초과	규정없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9개월 이상	9개월 이상
불가리아, 이집트	9개월 이상	규정없음
룩셈부르크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루마니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란, 카자흐스탄	1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12개월 이상	규정없음
말레이시아	12개월 초과	6개월 이상
가봉, 독일, 아제르바이잔, 영국,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홍콩, 슬로베니아	12개월 초과	12개월 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라오스, 몽골, 바레인, 벨라루스, 브루나이, 세르비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케냐,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12개월 초과	규정없음
파푸아뉴기니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네팔	183일 초과	183일 초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183일 초과	규정없음
아랍에미리트	18개월 초과	18개월 초과
파나마	270일 초과	규정없음

* 구체적인 사항은 각국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내용 참조

제4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보조적 활동

특정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활동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해당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해당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 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 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법인세법」제9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①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 이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②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이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①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②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③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등(이하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와 같은 자들을 “종속대리인”이라고 함)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 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일반적 의미의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국내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내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그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 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

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6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 독립성 판단 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국내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 3-2】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 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담당관-1084, 2023.11.3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일본법인이 일본에 소유한 서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의 서버 매매 및 임대를 위하여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제조세담당관-640, 2023.06.16.]

■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2018.09.05.]

■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 「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1, 2017.04.03.]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 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법령해석과-2398, 2015.09.21.]

■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서면법규과-1105, 2014.10.22.]

■ 미국 등의 LLP가 설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2013.01.29.]

■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2.03.27.]

■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011.08.08.]

■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1.10.13.]

■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과-167, 2011.03.31.]

■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스위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09.10.27.]

■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쿠웨이트법인이 쿠웨이트에서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09.03.13.]

■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판촉·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42, 2008.01.28.]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8.01.09.]

■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일 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2007.04.11.]

■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6.09.21.]

■ 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및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 2006.04.24.]

■ 국내증권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국내 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2006.09.14.]

■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협약」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5.09.27.]

■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

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업 46017-392, 2000.08.22.]

■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업 46017-104, 2000.02.26.]

[※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함]

■ 부품보관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제9조 및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총 46017-259, 1999.04.20.]

■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

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총 46017-9, 1999.01.07.]

■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81, 1998.06.18.]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74, 1998.06.17.]

■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 조세조약」제9조 및 「법인세법」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일 46017-133, 1998.04.28.]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 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5, 1997.01.15.]

■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판정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일 46017-386, 1996.11.28.]

■ 건축공사현장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의 산정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독 조세조약」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67, 1996.08.21.]

■ 연락사무소가 소속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받은 이자의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국내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6, 1996.01.26.]

■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국조 46017-183, 1995.12.13.]

■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내설치시 국내사업장 여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 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제4조 제2항(g)호에 따라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성립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일 46017-632, 1995.10.10.]

■ 안정성 검사업무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일 46017-583, 1995.09.19.]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국일 46017-247, 1995.07.03.]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 계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11, 1995.05.12.]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국조 6017-73, 1995.05.08.]

■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자등록

1. B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은 A사의 국내지점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A사의 국내지점은 B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 활동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부당행위시는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 (국세청 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B사가 A사의 국내지점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B사의 간주 국내 사업장의 지점 경비가 되는 것이며, A사의 국내지점의 국내 발생 경비는 전액 A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국일 46507-44, 1993.02.04.]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 46507-497, 1997.07.21.]

중동 전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 및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인증 획득 관련 실증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해외 바이어 등이 요구하는 제품의 실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수출 제품들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③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등

중동 전쟁을 계기로 수출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함께 관련 교육과 설명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대체시장 진출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인증 가이드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①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먼저, 기업들이 민간의 물류사를 통해 물건의 보관, 포장, 출고, 배송, 반품 등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는 물류의 전 과정(풀필먼트)을 대행하는 서비스 이용 시 최대 3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② 해외 물류센터 활용 지원 등

아울러, 부산항만공사(BPA)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산항만공사의 해외 물류센터*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물류센터에서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최대 70%, 3천만원 한도).

* 미국 (LA),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이와 함께, 중동 전쟁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물류 및 통관 관련 교육 및 전문가 1:1 매칭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임동우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조치에 이어 최근 중동 전쟁까지 수출과 관련한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관련 지원책들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추경) 4.23일(목)부터,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은 4.24일(금)부터, 각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과 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규제 관련정보·상담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해외진출 도모

□ 사업내용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 지원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1.5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 건수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억원	최대 4건*	70%	60%	50%	규격인증별 한도 별도 (건별 한도)

*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6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지원

【수출규제 정보·상담 제공 등】

◦ (수출국다변화 상담지원) 중동 지역 수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 현장 상담, 수출국 다변화(중동 인근 국가 진출) 교육·정보 제공

◦ (설명회 등) 추경 사업 홍보 및 수출규제 정보제공 등을 위한 설명회·규제대응전략 세미나 실시

□ 예산

◦ ('24) 153억원 → ('25) 253억원 (추경 100억원) → ('26) 275억원 (추경 100억원)

참고 2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물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온라인 수출(희망)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항공·해상 물류 집적을 통한 할인 제공, 풀필먼트 등 온라인 수출 특화 물류 서비스 등 지원

- (풀필먼트) 온라인 수출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풀필먼트* 비용의 70%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물류센터에 수출 제품을 선입고하고 물류사·플랫폼사가 이후 픽업, 운송 및 반품 등 전과정을 대행해 주는 물류 서비스 (배송이 빠르나 수수료가 높은 편)

구분	직전년도 수출실적	지원금액*(지원한도)
수출강소기업	500만불 이상 ~	3,000만원
수출성장기업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2,500만원
수출유망기업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2,000만원
수출초보기업	1,000불 이상 ~ 10만불 미만	1,500만원
내수기업	0불 ~ 1,000불 미만	1,000만원

  * 추경사업 지원에 한해 한도 500만원 증액 (기존 최대 3,000만원 → 3,500만원)

- (해외물류센터 활용)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운영 중인 해외물류센터* 이용 비용 지원 (최대 70%, 3천만원 한도)

  * 미국(LA), 네덜란드(로테르담), 스페인(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동부 자바)

- (우체국 협업 지원) EMS 등 우체국 물류 서비스 이용 시, 중기부(이용료 일부)와 우본(이용료 할인)이 공동 비용 지원

  ※ 우체국 협업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예산

◦ ('24) 168억원 → ('25) 123억원 → ('26) 195억원 (추경 21.8억원)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동향을 발표하였다.

* ❶ AI 모델·인프라 ❷ 반도체 ❸ 모빌리티 ❹ 보안·네트워크·양자 ❺ 로보틱스 ❻ 헬스케어 ❼ 생명·신약 ❽ 콘텐츠 ❾ 방산·우주항공·해양 ❿ 친환경 ⓫ 에너지·원자력·핵융합 ⓬ 첨단제조

이번 분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유치한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투자기업의 기술 분야*는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 한 기업이 여러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기술 분야의 투자 실적에 포함하고 12대 기술 분야의 전체 투자 실적 산정 시에 중복계상을 제거 후 집계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는 5.2조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8조원)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신산업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9억원으로, 신산업 이외 분야(19.1억원) 대비 1.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분야별

AI 모델 및 인프라(이하 인공지능) 분야가 전체 투자의 19.6%인 1.3조원을 유치하며, 12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1.18조원), 헬스케어(1.13조원), 첨단제조(0.97조원) 분야 등에도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 등이고, 감소한 분야는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

도체(△20.8%) 분야 등이다.

< 12대 신산업 분야별 벤처투자 금액 >

(단위 : 억원)

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대비
전체 벤처투자	76,802	67,640	53,977	66,315	68,111	2.7%
12대 신산업 분야 (중복제거)	63,115	51,685	42,784	52,657	52,014	△1.2%
AI 모델 및 인프라	17,450	14,157	8,001	13,420	13,352	△0.5%
반도체	3,457	3,237	3,566	5,559	4,400	△20.8%
모빌리티	1,704	1479	1,669	1,590	1,853	16.5%
보안·네트워크·양자	10,207	9,141	7,623	10,617	9,183	△13.5%
로보틱스	440	306	804	1,074	764	△28.9%
헬스케어	12,750	9,915	9,554	12,039	11,344	△5.8%
생명신약	8,641	5,119	3,532	4,056	5,493	35.4%
콘텐츠	20,879	16,698	11,352	10,288	11,852	15.2%
방산·우주항공·해양	1,017	1,522	1,163	1,999	2,383	19.2%
친환경	4,173	3,490	4,079	4,937	4,316	△12.6%
에너지·원자력·핵융합	2,250	2,179	3,132	4,217	1,890	△55.2%
첨단제조	10,535	9,905	10,749	12,507	9,761	△22.0%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기준

(2) 신규 및 후속투자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5.2조원 중 신규투자는 12.3%인 6,390억원, 후속 투자는 87.7%인 45,624억원으로, 투자사가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업력별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이루어졌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자 규모별

2025년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58개사이고 그 중 신산업 분야 기업은 131개사로 약 82.9%를 차지하였다. 특히 50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분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지역별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1조원(79.1%), 비수도권이 1.1조원(20.9%)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6조원)이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913억원)과 경남(1,071억원)이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대전은 생명신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투자를 유치한 ㈜트리오어 등이 있다. 경남은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이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등 2025년 벤처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이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간하는 '벤처투자 포커스'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이 제공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벤처투자 종합포털(www.vc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상세자료**

▸ (분석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유치한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

* ❶ AI 모델·인프라 ❷ 반도체 ❸ 모빌리티 ❹ 양자·보안·네트워크 ❺ 로보틱스 ❻ 헬스케어 ❼ 생명·신약 ❽ 콘텐츠 ❾ 방산·우주항공·해양 ❿ 친환경 ⓫ 에너지·원자력·핵융합 ⓬ 첨단제조

▸ (기술분류)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피투자기업의 기술 분야 분류

▸ (중복처리) 한 기업이 여러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기술 분야의 투자실적에 포함하고 전체 투자 실적 산정 시에 중복계상을 제거 후 집계

1.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 '25년 12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는 5.2조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8조원)의 76.4% 수준

◦ 최근 5년간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약 80%으로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12대 신산업 분야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9억원으로 12대 신산업 이외 분야(19.1억원)의 1.7배 수준

(1) 분야별

□ '25년 인공지능 분야 투자금액은 1.3조원(전년대비 △0.5% 감소)으로, 12대 신산업 투자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전체 6.8조의 19.6%)을 차지

* ('26.2, OECD) '25년 글로벌 벤처투자(4,271억 달러) 중 AI투자 비율은 61% (2,587억달러)

□ 인공지능 외에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분야는 콘텐츠(1.18조원), 헬스케어(1.13조원), 첨단제조(0.97조원) 분야 등

□ 전년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 등

□ 전년대비 투자가 감소한 분야는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 분야 등

*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 미래유망소재, 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등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4년 투자확대(전년대비 2천억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됨

< 12대 신산업 분야별 벤처투자 금액 >

(단위 : 억원)

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대비
전체 벤처투자	투자금액	76,802	67,640	53,977	66,315	68,111	2.7%
12대 신산업 분야 (중복제거)	투자금액	63,115	51,685	42,784	52,657	52,014	△1.2%
	비중	82.2%	76.4%	79.3%	79.4%	76.4%	-
AI 모델 및 인프라	투자금액	17,450	14,157	8,001	13,420	13,352	△0.5%
	비중	22.7%	20.9%	14.8%	20.2%	19.6%	-
반도체	투자금액	3,457	3,237	3,566	5,559	4,400	△20.8%
	비중	4.5%	4.8%	6.6%	8.4%	6.5%	-
모빌리티	투자금액	1,704	1479	1,669	1,590	1,853	16.5%
	비중	2.2%	2.2%	3.1%	2.4%	2.7%	-
보안·네트워크·양자	투자금액	10,207	9,141	7,623	10,617	9,183	△13.5%
	비중	13.3%	13.5%	14.1%	16.0%	13.5%	-
로보틱스	투자금액	440	306	804	1,074	764	△28.9%
	비중	0.6%	0.5%	1.5%	1.6%	1.1%	-
헬스케어	투자금액	12,750	9,915	9,554	12,039	11,344	△5.8%
	비중	16.6%	14.7%	17.7%	18.2%	16.7%	-
생명신약	투자금액	8,641	5,119	3,532	4,056	5,493	35.4%

	비중	11.3%	7.6%	6.5%	6.1%	8.1%	-
콘텐츠	투자금액	20,879	16,698	11,352	10,288	11,852	15.2%
	비중	27.2%	24.7%	21.0%	15.5%	17.4%	-
방산·우주항공·해양	투자금액	1,017	1,522	1,163	1,999	2,383	19.2%
	비중	1.3%	2.3%	2.2%	3.0%	3.5%	-
친환경	투자금액	4,173	3,490	4,079	4,937	4,316	△12.6%
	비중	5.4%	5.2%	7.6%	7.4%	6.3%	-
에너지·원자력·핵융합	투자금액	2,250	2,179	3,132	4,217	1,890	△55.2%
	비중	2.9%	3.2%	5.8%	6.4%	2.8%	-
첨단제조	투자금액	10,535	9,905	10,749	12,507	9,761	△22.0%
	비중	13.7%	14.6%	19.9%	18.9%	14.3%	-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기준

(2) 신규 및 후속투자

□ '25년 12대 신산업 분야 투자(52,014억원) 중 신규투자는 12.3%(6,390억원), 후속 투자는 87.7%(4.5조원)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

(3) 업력별

□ '25년 12대 신산업 분야 투자는 업력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이루어졌고 10년 초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30% 이상으로 나타남

□ 신산업 기업은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업력에서 나머지 분야 기업에 비하여 평균 투자액이 큼

* 「창업지원법」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 10년으로 인정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기업이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4) 투자규모

□ '25년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158개사) 중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 수준(131개사)

◦ 특히 50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6개사)은 모두 신산업 분야 기업

□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신산업 분야는 인공지능(35개사)이며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포함(2개사)

(5) 지역별

□ ‘25년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금액은 수도권 79.1%(4.1조원), 비수도권 20.9%(1.1조원)으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별 최대 투자분야는 서울-콘텐츠, 경기-반도체, 인천-인공지능

□ 비수도권 지역별 최대 투자 분야는 대전-생명신약, 울산·경남·세종-방산·우주항공·해양, 부산·광주·충북-첨단제조, 전북·전남·경북-친환경 등

□ 신산업 분야 투자가 가장 많은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 3,913억원(7.5%), 경남 1,071억원(2.1%), 부산 868억원(1.7%) 순

2. 주요 분야별 벤처투자 동향

(1) 인공지능 분야

□ ’25년 인공지능 분야 벤처투자는 1.3조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

□ AI 칩, 딥러닝 등 ‘AI인프라 및 핵심모델‘에 대한 투자는 7,614억원으로 인공지능 전체 투자의 57.0%

□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응용서비스 분야에 1,191억원 투자(전년대비 +58.6% 증가)

□ 의료영상 진단기기 등 ’AI 융합서비스‘ 기술 분야에 3,164억원 투자
(전년대비 +11.3% 증가)

□ 스마트 물류, 스마트홈 등이 대표적인 ’AI 기반 디지털 전환‘ 분야 비중은 ’23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소 추세

□ 대표적인 기업은 2025년 유니콘기업으로 확인된 리벨리온㈜, AI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 개발기업 네오사피엔스(주) 등

(2) 콘텐츠

□ ‘25년 콘텐츠 분야 벤처투자는 약 1.2조원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

◦ 게임,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증가가 요인
◦ 그러나 ’21년 투자규모(2.0조원)에 비하여 감소세로, 이는 공유경제 플랫폼(카셰어링, 숙박 등),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가 요인

□ 대표 기업은 모바일게임 ‘가디언 테일즈’ 개발업체 ㈜콩스튜디오코리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및 법률 AI ‘슈퍼로이어’ 개발업체 ㈜로앤컴퍼니 등

(3) 헬스케어

□ ‘25년 헬스케어 분야 벤처투자는 1.1조원으로 전년대비 5.8% 감소

□ IT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활용 치료, 재생의료* 등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6천억원(헬스케어 전체 투자의 53.2%)

* 손상된 인체의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정상 기능을 복원하는 의료 기술

□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분야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

* 개발·제조·유통 등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기능을 향상 시킨 화장품

(4) 생명신약 분야

□ ’25년 생명신약 분야 벤처투자는 5,493억원으로 전년대비 35.4% 증가

□ 바이오 신약* 분야 투자는 전년대비 58.0% 증가한 3,186억원, 혁신 신약** 분야는 전년대비 86.0% 증가한 1,246억원

* (바이오신약) 세포배양, 유전자 조작 등으로 만들어낸 신약

** (혁신 신약) 기존의 약물과는 다른 새로운 타깃이나 작용 기전을 통해 치료

□ 대표 기업은 면역항암제 개발사인 ㈜넥스아이와 ㈜알테오젠,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사인 ㈜트리오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인 일리미스테라퓨틱스㈜ 등

(5) 방산·우주항공·해양

□ ‘25년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는 2,383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

□ 특히, 드론 분야 투자는 ’25년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대표 기업은 소형 위성 발사체 제조기업 ㈜이노스페이스, 방산 및 산업용 드론업체인 ㈜니

어스랩, 인공위성 부품 및 시스템 업체인 ㈜솔탑, 선박용 연료 공급장치 등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

□ '25년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의 약 70%는 비수도권에서 유치

참고 2 **12대 신산업 기술 세부 내용**

12대 신산업	세부 기술 내용
AI 모델 및 인프라	▪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딥러닝, AI칩 등), 데이터 분석·컴퓨팅(빅데이터 등), AI 융합 서비스(AI 진단, 예측솔루션 등), AI 기반 디지털 전환(스마트 물류, 스마트홈, 확장현실 등)
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장비, 3D 집적회로, 차세대 메모리 등
모빌리티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보안·네트워크·양자	▪ 통신·인프라(사물인터넷, 5G/6G 통신 등),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기술, 양자컴퓨팅 등
로보틱스	▪ 제조 로봇(산업 제조 현장의 핸들링 로봇, 용접 로봇 등 지능형 로봇), 서비스로봇(제조 로봇 이외의 지능형 로봇) 등
헬스케어	▪ 정밀의료(재생의료, 인공장기, 유전자 활용치료, 유전자 진단 등), 뷰티테크(미용 의료기기, 혁신형 화장품), 푸드테크(간편식, 대체식품 등) 등
생명신약	▪ 바이오 신약, 개량신약, 혁신 신약 등
콘텐츠	▪ 미디어·콘텐츠(게임, 방송·영화·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공유경제 플랫폼, 핀테크, 구독서비스, 에듀테크 등), 메타버스 등
방산·우주항공·해양	▪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및 시스템, 해양플랜트 등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환경개선(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탄소포집 등), 자원순환(재자원화, 업사이클링 등),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등), 스마트 농축수산 등
에너지·원자력·핵융합	▪ 에너지 효율 향상(히트펌프, 스마트그리드, 분산 에너지 시스템 등), 원자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첨단제조	▪ 미래유망소재(기능성 탄소소재, 전도성 잉크, 초전도체 등), 제조공정(3D 머신비전, 3D~4D 프린팅, 스마트 패키징 등), 핵심부품·센서(바이오센서, 스마트 조명, 전자소자 등), 디지털 트윈, 디스플레이 등



통 화 명	4월 1일(수)	4월 2일(목)	4월 3일(금)	4월 6일(월)	4월 7일(화)
미 달 러 (USD)	1530.50	1507.80	1518.80	1507.60	1507.20
위 안 화 (CNH)	211.35	219.24	220.93	219.26	219.11
일 본 엔 (JPY)	964.22	950.90	952.11	944.23	944.01
유 로 화 (EUR)	1769.33	1748.14	1752.85	1735.70	1739.84
영 국 파 운 드 (GBP)	2025.23	2006.88	2008.92	1988.52	1994.70
캐 나 다 달 러 (CAD)	1100.17	1086.82	1091.21	1081.07	1083.50
홍 콩 달 러 (HKD)	195.24	192.37	193.78	192.35	192.31

통 화 명	4월 8일(수)	4월 9일(목)	4월 10일(금)	4월 13일(월)	4월 14일(화)
미 달 러 (USD)	1506.80	1476.10	1481.10	1479.80	1489.80
위 안 화 (CNH)	219.25	216.32	216.67	216.59	218.00
일 본 엔 (JPY)	948.60	930.88	931.19	925.83	935.10
유 로 화 (EUR)	1757.68	1721.58	1732.22	1727.00	1752.68
영 국 파 운 드 (GBP)	2015.12	1977.83	1988.97	1981.38	2013.32
캐 나 다 달 러 (CAD)	1087.35	1066.01	1071.82	1066.52	1080.54
홍 콩 달 러 (HKD)	192.29	188.48	189.06	188.96	190.24

통 화 명	4월 15일(수)	4월 16일(목)	4월 17일(금)	4월 20일(월)	4월 21일(화)
미 달 러 (USD)	1481.40	1473.10	1472.60	1480.00	1475.60
위 안 화 (CNH)	217.55	216.06	216.01	216.81	216.40
일 본 엔 (JPY)	932.55	927.62	925.35	930.73	929.31
유 로 화 (EUR)	1747.46	1738.92	1735.31	1737.89	1739.44
영 국 파 운 드 (GBP)	2010.11	1999.00	1992.58	1996.59	1997.45
캐 나 다 달 러 (CAD)	1076.09	1072.55	1074.93	1079.94	1081.70
홍 콩 달 러 (HKD)	189.11	188.05	188.19	188.98	188.44

통 화 명	4월 22일(수)	4월 23일(목)	4월 24일(금)	4월 27일(월)	4월 28일(화)	4월 29일(수)
미 달 러 (USD)	1470.80	1477.60	1480.60	1482.90	1473.10	1473.30
위 안 화 (CNH)	215.96	216.72	216.83	216.83	215.40	215.76
일 본 엔 (JPY)	922.45	926.51	927.00	929.63	924.24	923.26
유 로 화 (EUR)	1726.50	1729.60	1729.86	1736.40	1726.84	1726.19
영 국 파 운 드 (GBP)	1986.02	1994.91	1993.70	2004.36	1994.06	1992.20
캐 나 다 달 러 (CAD)	1076.48	1080.83	1080.85	1084.19	1081.29	1076.78
홍 콩 달 러 (HKD)	187.82	188.65	189.03	189.25	187.96	188.02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